2014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

2014.1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4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

2014.1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4년 이공분야 학술 · 연구지원사업 설명회 세부 일정표

▣ **수도권**(1.23,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 **및 충청권**(2.6, KAIST 대강당)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 개회 / 인사말씀 >	
09:30-	개 회	사회자
09:30-09:40 (10')	인사말씀	교육부/연구재단
	< 분야별 R&D사업, 제도 설명>	
09:40-10:00 (20')	**'14년 기초연구사업 추진 방향**	교육부 담당자
10:00-10:15 (15')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연구재단 담당자
10:15-10:30 (15')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연구재단 담당자
10:30-10:45 (15)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연구재단 담당자
10:45-11:00 (15')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구재단 담당자
11:00-11:20 (20')	**휴식**	
11:20-11:40 (20')	**질의·응답**	교육부 및 연구재단 사업담당자
11:40-	폐 회	사회자

※ 세부 발표시간 및 발표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2014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중점추진방향 ····· 3

Ⅱ. 2014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세부사업별 발표자료 ··· 11

1. 2014년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 13

2. 2014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29

3. 2014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 45

4. 2014년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 85

Ⅲ. 2014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이공분야) ····· 69

I

2014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중점추진방향

2014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중점 추진방향
2014. 1.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Contents
1 2013년 추진실적 및 성과
2 2014년 예산 및 지원규모
3 2014년 중점 추진 방향
4 2014년 사업별 주요개선 사항
5 2014년 이공분야 사업 개요
6 지역창의혁신인력양성사업

1. 2013년 추진실적 및 성과

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이관 현황

- **조직개편으로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교육부로 이관 시행**

(단위 : 억원)

사업	교육부		미래부	
	세사업	예산('13)	세사업	예산('13)
일반연구자지원	기본연구, 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935	모험연구, 커리어과학자, 우수신진연구, 여성과학자	1,461
중견연구자지원	-	-	핵심연구, 도약연구	3,220
기초연구기반구축	학문후속세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427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기초연구실험데이터허브구축,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	84
총계	3,362		4,765	

1

1. 2013년 추진실적 및 성과

나. 지원실적

- **2012년 대비 이공분야 3.5% 예산 증가**

2

1. 2013년 추진실적 및 성과

다. 지원성과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을 통해 양적으로 **SCI 논문 숫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 **개별 논문**의 **평균 IF**(Impact Factor)도 **향상**

사업명		SCI 논문 수(편)		
		2010	2011	2012
일반 연구자	기본연구, 보호분야, 리서치펠로우	3,335	5,380	5,700
	지역대학	397	405	450
학문후속세대양성		403	346	260
중점연구소		857	1,176	1,135
계		4,992	7,307	7,545

사업명		학술지 영향력 지수(IF)		
		2010	2011	2012
일반 연구자	기본연구, 보호분야, 리서치펠로우	2.28	2.68	2.68
	지역대학	2.20	2.56	2.10
중점연구소		2.63	2.78	2.91

3

1. 2013년 추진실적 및 성과

라. 주요 제도 개선 실적

학술 · 연구지원 관련 법령 정비

- 교육부의 이공분야 연구지원사업 특성 감안하여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정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 평가자 이력 및 실적 관리시스템 구축, 우수평가자 풀(pool)구성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및 창의연구 지원 강화

- 이공분야 "한국형 grand 제도"를 개인연구과제 전체로 확대 실시,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
- 리서치펠로우 지원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운영,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잠재적 역량을 연구성과로 연결

4

2. 2014년 예산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개)

주요사업	세사업	예산		과제수('14)		
		'13	'14	계속	신규	계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기본연구	240,827	230,750	4,325	1,100	5,425
	보호연구	2,173	1,500	26	6	32
	리서치펠로우연구지원	32,500	33,250	616	45	661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8,000	25,000	408	100	508
	소계	303,500	290,500	5,375	1,251	6,626
이공학학술연구 기반조성	박사후 국내연수	3,960	3,960	-	120	120
	박사후 국외연수	3,870	1,980	-	60	60
	대통령 Post Doc 펠로우십	8,250	11,250	54	21	75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6,624	23,680	36	4	40
	소계	42,704	40,870	90	205	295
	합계	346,204	331,370	5,465	1,456	6,931

* '13년 하반기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추경예산 100억원 포함

5

3. 2014년 중점 추진 방향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연구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창의적이나 실패위험이 높은 아이디어의 초기 연구 지원 ➡ "한국형 SGER" 시범 실시

* 한국형 SGER : 에세이 형식으로 연구 아이디어를 수시로 접수 받아 이에 대해 전문가(PM)가 평가하고, 최적의 연구자를 추천하여 별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패가능성을 전제로 보다 창의적·실험적 연구과제를 발굴·지원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수**를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4년에 신규과제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2.5년**으로 **조정**

* 지원기간 조정시 '14년 신규과제 수 변화 : 550여개 → 1,100여개
* 지원기간 유지시 신규과제 수 추이 : ('14) 550여개 → ('15) 2,180여개
* 한시적 지원기간 조정시 신규과제 수 추이 : ('14) 1,100여개 → ('15) 1,630여개

과제평가시 아이디어 중심의 "창의성" 항목 비중 제고

- 학문특성을 감안하여 **연구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연구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연구계획**으로 **실현**하기 **용이**하도록 개선

6

3. 2014년 중점 추진 방향

연구여건이 열악한 연구자 지원 확대

지역대학의 연구여건 개선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신규과제를 **지역대학**에 **할당**(신규4개과제 내외 34억원)
- **리서치펠로우 연구지원** 신규 과제를 **지역대학 중점 배정**(신규 45개과제 22억원)
-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지역대학 연구자**를 **우대**

  ※ 동점자가 모두 지역대학 연구자일 경우 여성, 연구업적 등을 고려

창의 · 소외 및 융합 학문 분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보호분야 지원) 이공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규 6개 과제

7

3. 2014년 중점 추진 방향

학술·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체제 개선

연구중단 및 조기종료 과제 최소화

-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
  - **인건비 지원 성격**의 **사업**은 **사업비를 연구비**로 **전환**하여 **지원**,
    신분변동 후에도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 계속**

    ※ 지역대학우수과학자의 수도권 이직에 한하며 잔여 연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계속 지원
  - 연구자 귀책사유로 연구 중단시 책임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지급 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고, 일정기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

    * 연구비목 중 연구수당(능률성과급) 부분을 환수하는 방안 검토

연구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 관리 강화

-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한 **이력 관리 추진**

8

3. 2014년 중점 추진 방향

학술·연구 성과 확산 강화

교육부 우수성과 50선 선정 및 성과집 발간

- 교육부 학술·연구 **우수성과 50선**을 **선정***하고, **성과자료집을 발간**하여 연구자간 공유·확산
  * 우수성과 50선 연구자 및 연구집단에 대해 장관표창 수여 추진
-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 신청**시 **우대***
  * (이공) 전문가평가 획득 점수 기준 3% 이내의 가산점 부여

9

4. 2014년 사업별 주요개선 사항

유형	사업명	주요 제도 개선 및 중점 추진 내용	
		현행	개선
개인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박사후국내·외연수, 대통령 Post.Doc)	• 전임교원으로 임용시 인건비 (0.5억원)를 연구비로 전환하여 지원	• 대통령Post-Doc 수혜자 정규직 취업시 **인건비 지원 중단** 및 연구수행 전념 기준 완화 (1책→3책5공)
		• 별도 우대 없음	• 학문후속세대 수혜자가 후속사업 신청시 우대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	• **기본**연구 **신규**과제의 **5%** 내외에서 "**한국형 SGER**" 시범 추진
		• 지원기간 3년	• '14년 기본·보호연구 신규과제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2.5년**으로 **조정**
집단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지원**	• 지방대학 우대 없음 (신규과제 없음)	• '14년 신규과제(4개)는 지방대학 부설연구소를 선정
		• 전임연구인력 인건비를 중점 연구소 사업비에서 전액 부담	• 타 연구과제 참여에 따라 전임연구원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10

5. 2014년 이공분야 사업 개요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단가 (백만원/연)	지원기간 (연)
개인	기본연구	이공분야 풀 뿌리 기초 연구지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50	3 이내
	보호연구	이공분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의 연구 지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50	3 이내
	리서치펠로우연구지원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고용연구원(고용예정자 포함)	50	3 이내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역대학의 역량 있는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	지역대학 (5대 과기대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50	3 이내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국내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 제공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인 자	33	1
	박사후국외연수	박사후 연구자에게 해외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선진 연수기회 제공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5년이내인 자	33	1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연구역량이 탁월한 젊은 박사후 연구자의 초기 일자리 정착과 연구비 지원	국내·외 대학 박사 학위 취득 연구자 중 만39세 이하이거나 박사학위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150	5(3+2)
집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	대학연구소 지원을 통해 대학에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소를 중심으로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여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대학 부설연구소	500 이내	9 (3+3+3)

11

6. 지역창의혁신인력양성사업

- **총사업기간** : `03년~ 계속
- **연차별 사업예산**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국비	221,680	25,700	27,580	**27,580**

- **주요사업내용**
  -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위치한 **대학**과 **기업**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이공계 분야 컨소시엄**
  - **지원내용 : 과제별 2억원** 이내, 5인이상 대학원생 참여, **총 3년** 이내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설명회) (교육부) → 과제 접수 (연구재단) → 요건심사 (연구재단) → 선정평가 (연구재단/SP) → 종합심사 (교육 등) → 사업개시 (주관기관)

12

감사합니다.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II

2014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세부사업별 발표자료

1. 2014년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2. 2014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3. 2014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4. 2014년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1. 2014년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14년도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시행계획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Contents
I 사업 기본 개요
II 과제신청 및 진행절차
III 대통령Post_Doc. 과제 수행절차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I 학문후속세대 사업개요

사업목적

◆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의 질적 향상 유도

지원대상

구 분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대통령Post_Doc.펠로우십
연수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해당 학문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지원대상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외연수 기 수혜자는 1회에 한하여 재수혜 가능 ※13년도 이전 국내연수 기 수혜자는 1회에 한하여 재수혜 가능	◦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내연수 기 수혜자는 1회에 한하여 재수혜 가능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만 39세 이하의 박사후 연구자 ※ 단, 40세 이상이라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미경과자 지원 가능 (2007.1.1 이후 취득)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학전임교수,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전임연구원 제외 ◦ 2014년도 5월이전(상반기), 10월이전(하반기)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신청가능 ◦ 전일제취업자는 연수개시와 동시에 퇴직 조건으로 신청 가능		

지원 규모 및 기간

I 학문후속세대 사업개요

지원규모 및 기간

세부유형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대통령Post_Doc.펠로우십
지원기간	1년	1년	5년(3+2)
지원규모	◦ 연수활동비 : 33백만원/년 ※ 연수자에 대한 기관 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 연수활동비 : 33백만원/년	◦ 연수활동비 : 50백만원/년 ◦ 연구비 : 100백만원/년 ※ 연수자에 대한 기관 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신규과제 지원규모

구 분	지원예산	과제수	과제당 지원규모	비고
·박사후국내연수·	3,960백만원	120 내외	33백만원/년	상.하반기 2회 공모
·박사후국외연수··	1,980백만원	60 내외	33백만원/년	하반기 1회 공모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3,150백만원	21 내외	150백만원/년	하반기 1회 공모
계	9,090백만원	201 내외		

* 박사후국내연수의 경우, 지역대학(KAIST, POSTECH, GIST, DGIST, UNIST제외)에 전체 과제수의 50% 이상 배분
**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특정 연수국가에 과제수의 50% 이상을 배분하지 않음 (선정평가 시 연수지역 다변화 고려)
※ 박사후국내연수의 상.하반기 지원예산 배분은 50:50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참여제한

신청 및 참여제한

-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내에서 1인 1과제만 신청 가능
-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 연구수행기간과 기간이 중복되는 전문연구요원 불가
- 타 연구개발 사업 연구 책임자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에 의거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신청 제한

신청 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 재단승인

학문후속세대 제출 서류

박사후국내·외연수 제출 서류

구분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제출서류	o 연수계획서 o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o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 o 지도교수 추천서	o 연수계획서 o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o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 o 지도교수 의견서 o 초청장 또는 e-mail로 협의된 내용, 교환서신 등	o 연구계획서 o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o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 o 활용계획서 o 기관장 추천서 o 박사학위(예정)증명서
공통사항	온라인 입력내용(온라인 신청 후 출력) 박사학위 취득 학위기 사본 또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사본		

신청실적요건

2009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SCI.SCIE급 등),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

- 박사후 국내.외 연수 : 1편 이상인 연구자
-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 3편 이상인 연구자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시 입력

학문후속세대 신청 기간 및 문의처

II 과제신청 및 진행절차

신청기간

구분	상반기	하반기
공모사업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신청기간	'14.2.13(목) 10:00 ~ ' 14.2.21(금) 18:00	2014.6월중 공고예정 (신청접수) 2014.7월중

※ 연수자는 상기 신청마감일까지 등록, 신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수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수기관의 검토.승인기간 : '14.2.13(목) 10:00 ~ '14.2.24(월) 18:00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사업 및 연구지원 일반 :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지원팀(042-869-6066)
  -연구사업통합시스템 및 KRI 관련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Desk(1544-6118)
- **기타 참고사항**
  -신청요강,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사용 매뉴얼 및 신청 관련 FAQ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별도 공지 예정

평가 절차 및 방법

II 과제신청 및 진행절차

평가절차 및 방법

- **박사후 국내·외 연수**

① 사전검토 (연수자에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 한국연구재단) → ② 전공평가 (1)온라인 평가 2)패널심의 / 한국연구재단) → ③ PM 협의체 (신규과제선정(안) 마련 / 한국연구재단) → ④ 종합심사 (신규과제선정(안) 최종 심의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대통령 Post_Doc. 펠로우십**

① 사전검토 (연수자에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 한국연구재단) → ② 전공평가 (토론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 한국연구재단) → ③ 발표평가 (발표평가 및 PM협의체 심의(안) 마련 / 한국연구재단) → ④ 종합심사 (신규과제선정(안) 최종 심의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선정평가 기준 및 협약체결

II 과제신청 및 진행절차

선정평가 기준

박사후국내·외연수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연수자의 우수성 연수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연수기관의 적합성 및 우수성	연구자의 잠재력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연구기관 지원의 적정성

선정확정 및 협약 체결

- **중복성 검토**
  신청과제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중복성 검토
- **최종선정**
  학문분야별 전공평가 및 기초연구사업 종합평가단 심의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연수자, 주관연구기관(장) 3자간 연수비 협약 체결
  ※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연수자 양자간 연수비 협약 체결

연수비 신청 및 지급 관리

II 과제신청 및 진행절차

연수준비 확정 및 연수비신청(박사후국외연수)

- **연수준비**
  - **연수기관, 지도교수, 연수기간 및 출국일 등 사전준비사항 확정**
  - 2013년도부터 연수국가에 관계없이 **출국VISA는 해당국가 연수기관에서 요구·인정하고, 출국 및 장기체류에 따른 해당국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VISA를 취득하여야 함**(연수목적과 무관한 VISA는 인정하지 않음)
- **연수비 신청(온라인 입력)**
  - 연수자가 재단 온라인 시스템에 국외연수에 따른 제반 등록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다음달 1일 기준으로 지급예정(추후 홈페이지 공지)

연수비 지급

- **지급방법**
  - **박사후 국내연수,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재단과 연수기관간 협약에 의거 재단이 연수기관에 연수비를 지급
  ※ 연수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수비를 집행하여야 함
  - **박사후 국외연수** : 협약 체결 후 연수자의 국내 은행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및 개별협약 체결 후 지급

연수비 관리 및 정산

Ⅱ 과제신청 및 진행절차

연수비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에 따라 연수비를 관리하여야 함
  - 박사후국내연수,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지원 연수비는 연수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앙 관리하며,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자 개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함
- 연수 조기종료에 따른 지원금 잔액은 반납함(일할계산)

※ 단,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함

연수비 정산

- 제출시기 : 연수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제출
- 연수비 집행정산 내역 : 소속기관 연수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

과제 관리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Ⅱ 과제신청 및 진행절차

과제 관리(박사후국외연수)

- 연수착수보고서 : 연수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연수진행상황(중간)보고서 : 연수 개시일로부터 5~7개월 중에 제출
- 귀국허용일수 초과시 일할 계산하여 반납(6개월 이하: 7일, 7개월 이상: 15일 허용)

※ 입국일 및 출국일 포함, 경조사 및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입력(공통)

- 결과보고서 제출(온라인으로 연수결과보고서(3쪽 내외)를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박사후국내연수자는 연수결과보고서만 제출

  ※ 박사후국외연수자는 ①연수결과보고서(지도교수의견서 포함), ②출입국현황, ③진로현황 제출
- 연수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연수자가 추후 과제 신청 시 기존 연수비 지원을 통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가(성과물 등록 의무)

  ※ 상기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공지

  연수수행 성과입력

  -연수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 시스템에 수시로 입력
- 박사후국외연수자 관리 강화 및 인력 양성·활용 정책 반영을 위해 연수 종료 후 5년까지 진로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

학문후속세대 추진 일정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2014. 1.22	14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신청 공고
2014. 2.13 ~ 2.21	상반기 신규과제 신청접수
2014. 3월 ~ 4월	상반기 선정평가 실시
2014. 5월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 공고
2014. 6월	상반기 신규과제 연구 착수(6.1)/하반기 신규과제 신청 공고
2014. 7월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접수
2014. 8월~9월	하반기 선정평가 실시
2014. 10월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 공고
2014. 11. 1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 착수(11.1)

대통령 Post_Doc.관리사항

Ⅲ 대통령Post_Doc수행절차

연차점검

- 계속 과제에 대해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등 연구진행 현황을 점검

① 연구보고서 접수	② 연차점검	③ PM 협의체
연구결과 제출 (종료 2개월 전)	온라인 점검	차년도 연구비 및 지원여부 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해당분야 PM중심의 연차점검을 통해 다년 지원과제의 계속 지원 여부 및 차년도 연구비를 결정
- 점검 결과, 당초 목표대비 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지원중단 또는 차년도 연구비 감액 조정

단계평가

① 단계 전공심사	② 단계 종합심사
1단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2단계 연구계획 평가	1단계 결과 검토 및 2단계 지원여부 최종결정
전공심사단	종합심사단

최종평가 체계

- 간소화된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미실시
-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 연구 성과는 연구 종료 후 5년간 수시로 등록(필수)
- 연구성과는 차기 사업 신규 신청 시 선정평가의 주요요소로 포함 예정

주요 과제 변경 관리(재단 사전승인)

Ⅲ 대통령Post_Doc수행절차

과제 변경	연구전념	연구비 변경
①과제 조기종료·중단 및 연구기관 변경 등 ②연구기관,연구목표, 연구기간 변경 등 ③과제포기, 협약위반 등	①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파견 ② 6개월 이상 외국체류 ③기타 과제 수행이 곤란한 사유 발생 등	①연구장비·시설비 변경 (건당 3천만 원 이상 신규 또는 당초 계획 변경 집행)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증액
•관련규정: 교육부 연구개발 사업처리 **규정 제 20조 협약의 변경** 및 **제21조 협약의 해약**	•관련규정: 교육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제 18 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전념**	•관련규정: 교육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제26조 연구개발비의 변경**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재단
신청서 작성·제출	검토·승인 요청	검토·승인

조기종료 및 중단 승인 절차

Ⅲ 대통령Post_Doc수행절차

① 공문 및 관련서류 발송

○ 관련 제출 서류 : ㉠협약변경신청서*와 ㉡관련증빙자료
○ 상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의 과제관리 담당부서에 제출(책임연구자)
○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재단에 조기종료(중단) 요청(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 과제관리 담당자)

② 공문 접수 및 각종 보고서 요청

○기관에서 발송한 공문접수 후, 신청 조기종료(중단) 과제에 대한 각종 보고 요청공문(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양식 첨부)을 소속기관으로 발송합니다(재단 과제관리 담당자)

③ 요청 보고서 작성 후 재단 송부 및 자료 검토

○요청보고서(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후 재단으로 발송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담당자)
○ 재단의 담당부서에서 접수된 보고서를 검토합니다(재단 담당자)

검토결과: 조기종료·중단 인정

○조기종료(중단) 승인 공문 소속기관 발송
○ 연구비 정산 후 과제 조기종료(중단) 완료

검토결과: 조기종료·중단 불인정

○ 재단 내 협의체를 통해 제재조치 결정
○ 연구비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적 집행 연구비 환수 조치
○결정된 제재 조치 결과 소속기관 통보 후협약해약(중단)처리

*신청서는 산학협력단/과제관리 부서에 요청,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자료실>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자료 다운>별지 제19호 서식 사용

기관변경 승인 절차

Ⅲ 대통령Post_Doc수행절차

① 공문 및 관련서류 발송

○관련 제출 서류 : ㉠협약변경신청서*와 ㉡재직증명서(이직 후 신청시) 또는 임용예정증명서(이직 전 신청시)
○상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의 과제관리 담당부서에 제출(책임연구자)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재단에 기관변경 요청(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 과제관리 담당자)
○위 관련 절차(공문발송)는 변경 전 소속기관의 과제관리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② 공문 접수 및 관련서류 검토

○기관에서 발송한 공문을 접수합니다. 만약 전산시스템으로 재단에 공문을 발송할 수 없는 기관의 담당자는 재단 일반연구지원팀 대통령Post-Doc 팰로우십 담당자와 개별 연락 후 메일로 공문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공문 접수 후 재단의 담당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③ 승인결과 송부 및 해당기관 간 과제이관

○관련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기간 변경 승인공문을 해당기관(변경 전 기관)에 발송합니다.
○승인 공문을 접수 한 변경 전 소속기관의 과제 관리 담당자는 변경 후 소속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제 이관(연구비 이관 포함)을 실행합니다.

*신청서는 산학협력단/과제관리 부서에 요청,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자료실>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자료 다운>별지 제19호 서식 사용

국·내외 파견 승인 절차

Ⅲ 대통령Post_Doc수행절차

① 공문 및 관련서류 발송

○ 관련 제출 서류 : ㉠협약변경신청서*와 ㉡파견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초청장/파견 임명장 등)
○ 승인 요청 시기 : 승인 요청 파견일 1~3개월 전
○ 상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의 과제관리 담당부서에 제출(책임연구자)
○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재단에 파견 연구 요청(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 과제관리 담당자)

② 공문 접수 및 관련서류 검토

○기관에서 발송한 공문을 접수합니다. 만약 전산시스템으로 재단에 공문을 발송할 수 없는 기관의 담당자는 재단 일반연구지원팀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담당자와 개별 연락 후 메일로 공문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공문 접수 후 재단의 담당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③ 승인결과 송부 및 파견 시작

○관련 서류 검토 후 승인결과(검토의견서 포함)를 해당소속기관에 발송합니다.
○승인 공문을 접수한 소속기관 과제관리 담당자는 연구책임자에게 위 사실을 통보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파견일에 파견(연구)를 시작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산학협력단/과제관리 부서에 요청,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자료실>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자료 다운>별지 제19호 서식 사용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절차

Ⅲ 대통령Post_Doc수행절차

① 공문 및 관련서류 발송

○ 관련 제출 서류 : ㉠협약변경신청서*와 기타 연구개발비 변경 관련 자료(변경할 연구장비 세부 상세 자료 등 연구책임자가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관련 자료 →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님)
○ 상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의 과제관리 담당부서에 제출(책임연구자)
○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재단에 연구개발비 변경 요청(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 과제관리 담당자)

② 공문 접수 및 관련서류 검토

○기관에서 발송한 공문을 접수합니다. 만약 전산시스템으로 재단에 공문을 발송할 수 없는 기관의 담당자는 재단 일반연구지원팀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담당자와 개별 연락 후 메일로 공문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공문 접수 후 재단의 담당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③ 승인결과 송부 및 연구 시작

○관련서류 검토 후 승인결과(검토의견서포함)를 해당 소속기관에 발송합니다.
○ 승인 공문을 접수한 소속기관 과제관리 담당자는 연구책임자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여 연구개발비를 변경합니다.

*신청서는 산학협력단/과제관리 부서에 요청,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자료실>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자료 다운>별지 제19호 서식 사용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Ⅲ 대통령Post_Doc수행절차

인건비,직접비 집행기준

구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인건비	· 인건비는 50,000천원을 정액으로 계상
직접비	외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및 연구보조인력만 기재, 동료교수는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개인단위 과제)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 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Ⅲ 대통령Post_Doc수행절차

연구장비·재료비 집행기준

구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Ⅲ 대통령Post_Doc수행절차

연구 활동비 집행기준

구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국외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유 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연구와 직접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Ⅲ 대통령Post_Doc수행절차

연구장비·재료비 집행기준

구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감사합니다.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2. 2014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이공분야 학술 · 연구지원사업
2014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시행계획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Contents
I 사업 기본 개요
II 세부 사업 시행 계획
III 신청 및 수행 절차
1

일반연구자지원사업

I 사업 기본 개요

사업목적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연구자의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연구역량을 확대

지원대상

구 분	기본연구	보호연구	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구형태	개인연구	개인연구	개인연구	개인연구
지원대상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고용연구원 (고용예정자 포함*)	지역대학 (5개 과기대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예산	230,750백만원	1,500백만원	33,250백만원	25,000백만원

참고사항

- 대학의 리서치펠로우 고용 확약을 받은 박사 후 연구원
- 수도권(서울, 경기,인천) 제외, 5개 과학기술대학교(KAIST, POSTECH, GIST, DGIST, UNIST)를 의미

3

일반연구자지원사업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14년도 중점 추진 방향

구분	내용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수를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4년에 신규과제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2.5년으로 조정 - 지원기간 조정시 '14년 신규과제 수 변화 : 550여개 -> 1,100여개 - 지원기간 유지시 신규과제 수 추이 : ('14) 550여개 -> ('15) 2,180여개 - 한시적 지원기간 조정시 신규과제 수 추이 : ('14) 1,100여개 -> ('15) 1,630여개
지역대학의 연구여건 개선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리서치펠로우 연구지원 신규과제를 지역대학 중점 배정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여성, 연구업적 등을 고려 - 리서치펠로우 연구지원 신규 45개 과제 22억원 내외
창의적이나 실패위험이 높은 아이디어의 초기 연구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구조로서 이공분야 "한국형 SGER" 시범 실시 - 한국형 SGER : 예세이 형식으로 연구 아이디어를 수시로 접수 받아 이에 대해 전문가(PM)가 평가하고, 최적의 연구자를 추천하여 별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패가능성을 전제로 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연구과제를 발굴 및 지원

4

기본연구지원사업

Ⅰ 사업 기본 개요

사업목적

탁월성에 입각한 창의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기초 연구과제 발굴 · 지원으로
개별 연구자의 기초 연구역량 제고

세부내용

구 분	기본연구지원사업
연구형태	개인연구
지원대상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지원기간	2.5년 이내
지원규모	50백만원 내외/년

2014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신규과제(전체)		최초 지원		후속연구 지원		비고
	지원예산	과제수	지원예산	과제수	지원예산	과제수	
기본연구	27,501	1,100내외	24,751	990내외	2,750	110내외	하반기 공모

참고사항

- '14년에 선정되는 기본연구 는 최대 2.5년 지원('15.5.1일 2년차 연구개시, '17.4.30일 연구종료)
- 기본연구 신규과제 중 5% 내외의 과제를 "한국형 SGER 프로그램"으로 추진

6

기본연구지원사업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한국형 SGER

구분	내용
지원 규모 및 기간	기본연구 신규과제 중 5% 내외의 과제를 "한국형 SGER 프로그램" 으로 추진 (지원 기간 및 단가는 기본연구와 동일하게 설정)
과제 신청 및 접수	연중 수시로 SGER 프로그램에 대한 과제제안서 신청 접수 - 과제계획서는 기존의 형식이 아닌 5쪽 내외의 에세이(ESSAY) 형식으로 작성 - 과제 주제(적합한 연구자 Pool포함)는 외부 연구자 및 학회가 공개적으로 제안하거나 연구재단 전문위원(RB, CRB), 프로그램 관리자(PM)가 추천 연구재단 전문위원(RB, CRB) 및 프로그램 관리자(PM)는 외부에서 제안된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에 적합한 연구자 추천
과제 평가 및 선정	평가는 하반기 1회에 걸쳐 시행(과제 접수는 수시시행) 재단의 PM협의체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결정(필요시 외부 전문가 심의 가능)

7

보호연구지원사업

Ⅰ 사업 기본 개요

사업목적

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학문의 다양성 · 균형성을 유지하고 해당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보호 · 육성이 필요한 분야 지원

세부내용

구 분	보호연구지원사업
연구형태	개인연구
지원대상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지원기간	2.5년 이내
지원규모	50백만원 내외/년

2014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신규과제(전체)		최초 지원		후속연구 지원		비고
	지원예산	과제수	지원예산	과제수	지원예산	과제수	
보호연구	125	6내외	125	6내외	-	-	하반기 공모

참고사항

- '14년에 선정되는 보호연구 는 최대 2.5년 지원('15.5.1일 2년차 연구개시, '17.4.30일 연구종료)

8

리서치펠로우지원사업

Ⅰ 사업 기본 개요

사업목적

리서치펠로우 제도와 R&D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대학 연구현장의 조기 정착과 함께 실효성을 제고

세부내용

구 분	리서치펠로우원사업
연구형태	개인연구
지원대상	리서치펠로우 제도를 도입한 지역대학에 고용된 리서치펠로우
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규모	50백만원 내외/년

2014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신규과제(전체)		최초 지원		후속연구 지원		비고
	지원예산	과제수	지원예산	과제수	지원예산	과제수	
리서치펠로우	2,245	45내외	2,245	45내외	-	-	상반기 공모

참고사항

- 지역대학의 연구여건 개선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리서치펠로우 신규과제를 모두 지역대학에 배정
- 신규 45과제, 22억원 내외

9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Ⅰ 사업 기본 개요

사업목적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역량 제고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세부내용

구 분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연구형태	개인연구
지원대상	지역대학(5대 과기대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규모	50백만원 내외/년

2014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신규과제(전체)		최초 지원		후속연구 지원		비고
	지원예산	과제수	지원예산	과제수	지원예산	과제수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4,874	100내외	4,386	90내외	488	10내외	상반기 공모

참고사항

- 지역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및 5대 과학기술대학교를 제외한 대학
- 5개 과학기술대학교는 KAIST, POSTECH, GIST, DGIST, UNIST를 의미

10

일반연구자지원사업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4. 1월	'14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신청 공고
'14년. 2월	상반기 신청과제 접수(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우수과학자)
'14. 3월~4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14년. 5월말	'14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 공고
'14. 6. 1	상반기 신규과제 연구 착수
'14. 6월	'14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기본연구, 보호연구) 신규과제 신청공고
'14. 7월	하반기 신규과제 접수(기본연구, 보호연구)
'14. 8월~9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14. 10월	'14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구, 보호연구)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 공고
'14. 11. 1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 착수

11

신청 자격

신청 및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

3책 5공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3책 5공 예외사항 : 잔여연구기간 4개월 미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 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1인 1과제 신청

- 일반연구자지원사업(미래부 소관 신진연구자지원사업 포함) 내에서는 1인 1과제만 신청가능
- 상, 하반기 각 1회 신청 가능(단, 상반기 선정 연구책임자는 하반기 신청 불가)

1인 1과제 참여(수행) 가능

- 일반연구자지원사업(미래부 소관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리더] 포함) 내에서는 계속 과제를 포함하여 1인 1과제만 참여(수행)가능

*단,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 연구기간이 10개월 이내일 경우 예외로 함(사업 개시일 기준)

이외 신청제한 사항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중견 연구자와 리더 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 책임자는 신청 제한함

*단,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 연구기간이 10개월 이내일 경우 예외로 함(사업개시일 기준)
*단, 기반구축사업 연구책임자는 신청 가능

13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주관 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의 개인정보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접속하여 갱신 (KRI 접속 및 개인정보 갱신 방법은 별도로 공지될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람)

14

선정 평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서면평가(온라인 및 패널 심의)는 과제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

① 사전검토	➡	② 선정평가	➡	③ PM 협의체	➡	④ 종합심사
연구책임자에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1)온라인 평가 2)패널심의		분야별연구비배분 및 자원과제 심의		선정결과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공평가) 신청과제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PM이 해당분야의 평가보고서 작성
- (PM 협의)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분야 PM의 협의를 통해 신규과제 예비선정(안) 마련
- (종합심사) 예비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여 종합심사를 추진하고, 최종 선정 결과 발표.

15

향후 관리사항

연차점검

- 계속 과제에 대해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등 연구진행 현황을 점검

①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② 연차점검	③ PM 협의체
대상과제 연차실적 계획서 접수	온라인으로 연차점검	차년도 연구비 및 지원여부 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해당분야 PM중심의 연차점검을 통해 다년 지원과제의 계속 지원 여부 및 차년도 연구비를 결정
- 점검 결과, 당초 목표대비 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지원중단 또는 차년도 연구비 감액 조정
- 리서치펠로우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 내용 조정, 보완을 위한 컨설팅 실시

최종평가 체계

- 간소화된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미실시
-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 연구 성과는 연구 종료 후 5년간 수시로 등록
- 연구성과는 차기 사업 신규 신청 시 선정평가의 주요요소로 포함 예정
- 리서치펠로우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목표 달성 정도 등 연구개발 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

16

우수성과 과제 후속연구지원 제도

추진방향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우수성과과제에 대한 후속연구지원 및 차상위 사업 지원을 통해 과제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 지향적 과제수행을 유도

평가절차

①연구성과물 접수	②선정평가	③후속연구지원과제 선정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학문단)패널심의 (PM협의체)우선순위 결정	최종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전에 연구성과물을 온라인으로 제출(추가지원을 희망하는 연구책임자에 한함)
- 제출된 성과물에 대해 해당분야 PM중심의 패널평가 실시
- 평가기준: 연구성과물의 질적 우수성등
- (선정 후) 연구자는 추가지원 기간 동안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PM중심으로 연구계획서를 검토·확정(컨설팅역할)

17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추진체계[신규과제]
추진단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계획수립
사업시행 계획 확정
신규과제 공모
신청현황 및 평가 계획 접수
과제접수 및 평가 계획 수립·보고
신청내용 확인
연구계획서 작성
신규과제 선정평가
서면평가(온라인)
사업 종합평가단 심의
PM협의체 운영
신규과제 평가결과 보고
선정결과 통보
선정여부 확인
협약 및 연구비지원
총괄협약
총괄 및 개별 협약 체결
개별협약(전자협약)
연구비 지급
연구비 요청·수령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18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추진체계[계속과제]
추진단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계속과제 연차점검
연차점검 실시
계획서 검토·승인
연구실적·계획서 제출
연차점검 결과 통보
연차점검 결과 확인
연차점검 결과 확인
통과
협약 및 연구비지원
총괄협약
총괄 및 개별 협약 체결
개별협약(전자협약)
협약용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연구비 지급
연구비 요청·수령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제종료 사후관리
성과관리
결과보고서검토 승인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비잔액 국고반납
집행실적 검토 및 잔액반납(정산)
연구비 집행실적 제출
연구비집행실적 입력
○ 통상상반기과제(6월 연구개시)는4월~5월,하반기과제(11월 연구개시)는 9월~10월 중에 연차점검을 실시합니다.
- 차년도 연구개시 2개월 전
○ 연차점검 전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점검일정 및 절차 등을 공지합니다.
○ 연차점검결과(Pass/Fail)에 따라 과제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9

주요 과제 변경 관리(재단 사전승인)

과제 변경

①과제 조기종료·중단 및 연구기관 변경 등
②연구기관, 연구목표, 연구기간 변경 등
③과제포기, 협약위반 등

•관련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사업처리 규정 **제 20조 협약의 변경** 및 **제21조 협약의 해약**

연구전념

①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파견
② 6개월 이상 외국체류
③기타 과제 수행이 곤란한 사유 발생 등

•관련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사업처리 **제 18 조 연구개발과제수행전념**

연구비 변경

①연구장비·시설비 변경 (건당 3천만 원 이상 신규 또는 당초 계획 변경 집행)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증액

•관련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사업처리 **제26조 연구개발비의 변경**

연구책임자: 신청서 작성·제출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요청 → **연구재단**: 검토·승인

20

조기종료 및 중단 승인 절차

① 조기종료(중단) 온라인 신청공문 및 관련서류 발송

○관련 제출 서류 : ㉠협약변경신청서*와 ㉡관련증빙자료
○상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의 과제관리 담당부서에 제출(연구책임자)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작성 후 연구지원통합시스템을 통해 조기종료(중단) 신청(산학협력단 담당자)

② 온라인 신청 접수 및 각종 보고서 요청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신청 조기종료(중단) 과제에 대한 각종 보고 요청
○관련 서식(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양식 첨부)을 온라인 다운로드

③ 요청 보고서 작성 후 온라인 탑재

○요청보고서(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후 온라인 탑재(산학협력단 담당자)
○재단의 담당부서에서 온라인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재단 담당자)

검토결과: 조기종료·중단 인정

○조기종료(중단) 온라인 승인 처리
○연구비 정산 후 과제 조기종료(중단) 완료

검토결과: 조기종료·중단 불인정

○재단 내 협의체를 통해 제재조치 결정
○연구비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적 집행 연구비 환수 조치
○결정된 제재 조치 결과 소속기관 통보 후 협약해약(중단)처리

*신청서는 산학협력단/과제관리 부서에 요청,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자료실>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자료 다운>별지 제19호 서식 사용

21

기관변경 승인 절차

① 주관연구기관 온라인 변경 신청

○관련 제출 서류 : ㉠협약변경신청서*와 ㉡재직증명서(이직 후 신청시) 또는 임용예정증명서(이직 전 신청시)
○상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의 과제관리 담당부서에 제출(연구책임자)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작성 후에 연구사업통합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산학협력단 담당자)
※ 위 관련 절차(공문발송)는 변경 전 소속기관의 과제관리 담당자가 진행

② 온라인 신청 접수 및 관련내용 검토

○ 온라인 주관연구기관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 검토(재단 담당자)
○ 사업 관련 규정과 지침, 신청요강 등을 참고하여 제출된 내용에 대한 검토(재단 담당자)

③ 승인결과 송부 및 해당기관 간 과제이관

○ 관련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기간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온라인 승인(재단 담당자)
○ 온라인 승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 전 소속기관의 과제 관리 담당자는 변경 후 소속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제 이관(연구비 이관 포함)을 실행

*신청서는 산학협력단/과제관리 부서에 요청,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자료실>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자료 다운>별지 제19호 서식 사용

22

국·내외 파견 승인 절차

① 국내 · 외 파견연구 온라인 신청

○ 관련 제출 서류 : ㉠협약변경신청서*와 ㉡파견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초청장,파견 임명장 등)
○ 승인 요청 시기 : 승인 요청 파견일 1~3개월 전
○ 상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의 과제관리 담당부서에 제출(연구책임자)
○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작성 후에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 온라인 신청(산학협력단 담당자)

② 접수 및 관련 내용 검토

○ 온라인 주관연구기관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 검토(재단 담당자)
○ 사업 관련 규정과 지침, 신청요강 등을 참고하여 제출된 내용에 대한 검토(재단 담당자)

③ 승인결과 확인 및 파견 시작

○ 관련 서류 검토 후에 파견연구에 문제가 없으면 온라인 승인
○ 온라인 승인 확인 후에 주관연구기관 과제관리 담당자는 연구책임자에게 위 사실을 통보
○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파견일에 파견(연구)를 개시

*신청서는 산학협력단/과제관리 부서에 요청,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자료실>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자료 다운>별지 제19호 서식 사용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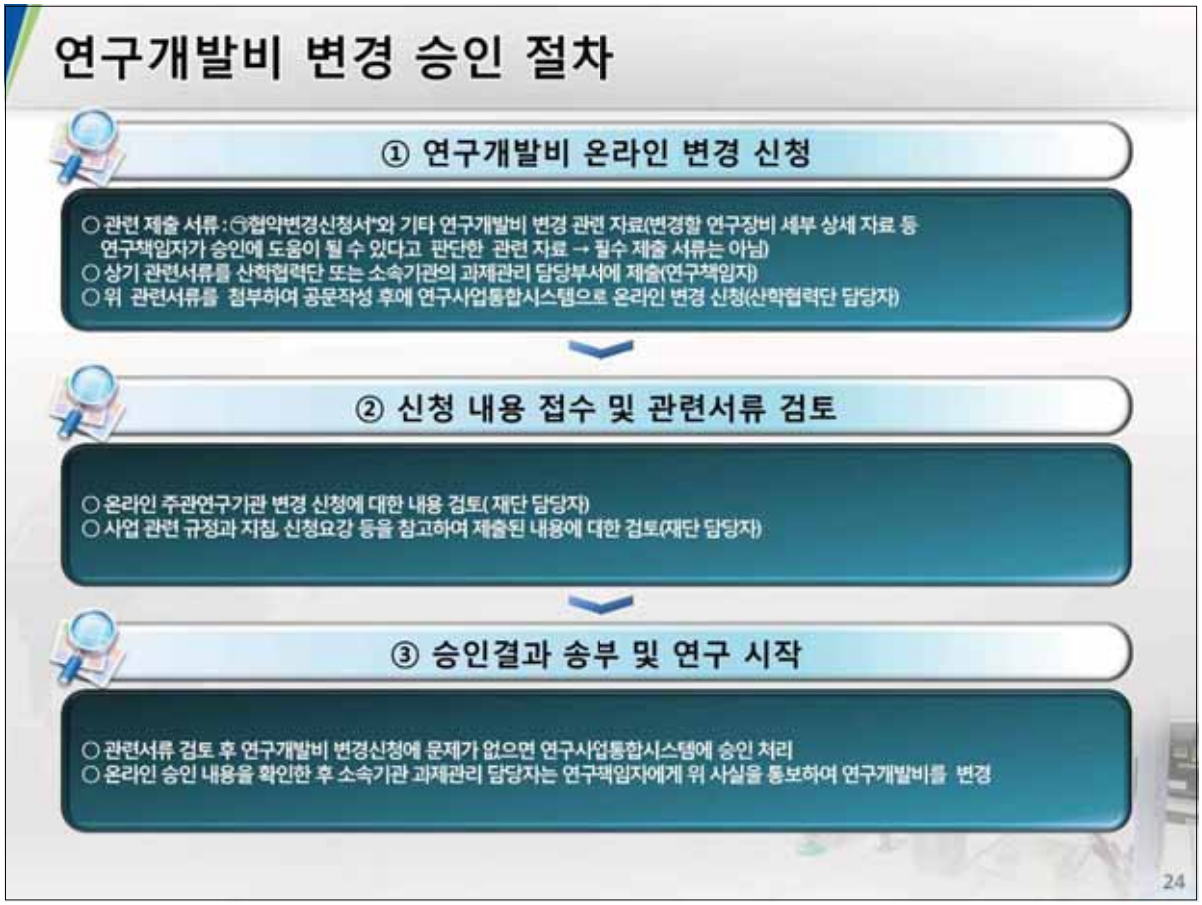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비 온라인 변경 신청
○ 관련 제출 서류 : ㉠협약변경신청서*와 기타 연구개발비 변경 관련 자료(변경할 연구장비 세부 상세 자료 등 연구책임자가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관련 자료 →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님)
○ 상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 또는 소속기관의 과제관리 담당부서에 제출(연구책임자)
○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작성 후에 연구사업통합시스템으로 온라인 변경 신청(산학협력단 담당자)
② 신청 내용 접수 및 관련서류 검토
○ 온라인 주관연구기관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 검토(재단 담당자)
○ 사업 관련 규정과 지침, 신청요강 등을 참고하여 제출된 내용에 대한 검토(재단 담당자)
③ 승인결과 송부 및 연구 시작
○ 관련서류 검토 후 연구개발비 변경신청에 문제가 없으면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 승인 처리
○ 온라인 승인 내용을 확인한 후 소속기관 과제관리 담당자는 연구책임자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여 연구개발비를 변경
24

감사합니다.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25

3. 2014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014. 1.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목차
1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사업개요
2 2014년 사업계획
3 세부추진일정 및 투자계획

1. 사업개요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②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③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성과

④ 기대효과

2

① 사업목적

-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 · 전문화 유도
- 중점연구소가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3

②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지원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추진경과

- ('80)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시작 (교육부)
- ('90) 중점연구소와 우수연구소로 분리 지원 시작
- ('99)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실시 및 신청 조건 강화
- ('05) 현재 대학중점연구소 사업모델 완성
  *이공계 연 5억원, 인문사회 연 2.3억원 이내, 3단계 9년

4

③ 지원내용 및 사업 추진 성과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규모	'14년 신규과제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집단 (연구지원)	이공계 全분야	이공계 대학부설연구소	공모	9년 (3+3+3)	5억원 이내/연 (간접비별도)	4개

- 단계별 1차년도에 특별지원기자재 구입비 지원(1단계 2억원 이내, 2~3단계 1억원 이내)
- 추가지원조건 : 정부출연금(직접비)의 10% 이상 산업체 등 대응자금 투자 필요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2010		2011		2012	
	SCI급 논문수	비SCI급 논문수	SCI급 논문수	비SCI급 논문수	SCI급 논문수	비SCI급 논문수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859	190	1,176	241	1,135	219

5

④ 기대효과

지역의 연구거점 육성

- 성장가능성이 큰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장기지원**(9년)함으로써 **지역**의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자립가능성 확보**
  - 특히 **대학 스스로 육성방안**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화 연구소**로 **발전 가능**

젊은 우수연구자 육성

- **연구소가 전임 연구교수 및 전임 연구인력에게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젊은 우수연구자 육성**

6

2. 2014년 사업계획

2014 사업계획

① 신규과제 선정

② 계속과제 관리(연차점검, 단계평가)

③ 종료과제 성과평가

- ◆ '14년 신규과제(4개)는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전문화가 가능한 지방대학 부설연구소를 선정
- ◆ 전임연구인력 인건비를 타 연구과제 참여에 따라 인건비 지원 비율이 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소의 자립성 제고를 위해 전임연구인력의 장기근속환경 조성

7

① 신규과제 선정

신청자격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부설연구소 중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연구소(대학별 1개 신청 가능)

  * 5대 과학기술대학(KAIST,POSTECH,GIST,DGIST,UNIST)을 제외한 대학

- '14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참여제한

평가절차

- **평가단계**

①사전검토	②패널 및 발표평가	③종합심사
신청자격 등 검토	1) 패널평가(50%) 2) 발표평가(50%)	선정결과 최종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발표평가는 패널평가 결과 상위 2~3배수(최종 선정예상 과제 기준) 과제만 시행
❖ 최종심의에서는 패널평가 및 발표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합산

- **평가항목 : 연구소 기반구축, 연구수행 및 인력활용·양성 계획 등**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연구개시 : 2014. 9. 1.**

8

② 계속과제 관리(연차점검)

연구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연구비 집행 적정성 점검

연차 점검

점검대상

- '07~'12년 선정된 36개 연구소

  '07년 선정 8개, '09년 선정 18개,
  '10년 선정 8개, '12년 선정 2개

점검방식

- 연차실적계획서를 바탕으로 PM 점검

점검내용

- 당해연도 목표대비실적, 차년도 연구계획 및 연구비 계상의 적절성 등 검토

결과활용

- 점검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조정

9

② 계속과제 관리(단계평가)

평가대상 : 각 단계(3년) 종료 연구소

단계평가 등급 및 예산조정 비율(안)

등급	S	A	B	C	D
배분 비율	5% 내외	10% 내외	65% 내외	15~20%	
예산조정	110%	105%	100%	90%	지원중단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단계평가 결과 탈락된 연구소가 소속된 대학은 향후 2년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신청을 제한함
- 2014년도에는 단계평가 대상 연구소는 없음

지표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주기 성과관리

발표평가: 연구실적 및 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한국연구재단) → 종합심사: 평가결과 심의 · 확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평가항목 : 단계 성과(대학의 지원실적, 성과목표 달성도, 연구과제 수행결과 등) 및 단계 계획(연구소 육성계획, 성과목표, 연구 및 인력양성 계획 등)

10

③ 종료과제 성과평가

평가대상
- '05년 선정된 9개 연구소

평가단계 및 절차

발표평가: 연구실적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한국연구재단) → 평가심의: PM협의체 심의 (한국연구재단)

평가항목
- 최초 계획 대비 대학의 **지원실적**, 성과**목표 달성도**, 연구과제 수행결과, 정부**지원 종료 후의 연구소 운영계획** 등
  -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결과활용
- 평가결과가 **60점 미만**(100점 기준)인 **연구책임자**는 향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1

3. 세부추진일정 및 투자계획

세부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14. 3	• '14년도 사업공고 • '10년도 선정 계속과제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및 점검
'14. 5	• '10년도 선정 계속과제 연구 개시 • 신규과제 신청 접수
'14. 6	• 신규과제 선정평가
'14. 7	•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속 • '07년, '09년, '12년 선정 계속과제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및 점검
'14. 8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07년, '09년, '12년 선정 계속과제 협약 체결
'14. 9	• 신규과제 및 '07년, '09년, '12년 선정 계속과제 연구개시
'14. 10	• '05년도 선정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접수
'14. 11	• '05년도 선정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평가

투자계획

사업명		2013년 실적	2014년 계획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지원	예산	26,624	23,680
	과제수	45(계속 45)	40(신규 4/계속 36)

12

4. 2014년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2014년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NRF 한국연구재단

I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개요

Ⅰ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 · 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역 단위 산학협력을 촉진,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지방대학과 지역기업간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2

Ⅰ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개요

2. 추진 경위

- 추진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역교육여건개선과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 지원 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과제 대상
  '03년~13년까지 총 2,741개 과제 2,750억 원 지원

3

Ⅰ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개요

3. 사업 특성

- 지역 산업체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4개 광역시 · 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금의 40~50%를 석 · 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원
- 대학을 주관사업기관으로 하고, 협동사업기관(기업)을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4. 지원규모

- 지원비(국고지원금) : 과제별 국고지원금 1억 ~ 2억 원 이내
  - 직접비(인건비) : 국고지원금 40 ~ 50% (석·박사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 직접비 :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 지원 기간 : 3년 이내

4

Ⅰ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개요

5. 사업 투입대비 성과

투자실적	인력양성	학술/산학 활동
◆ 과제 2,741과제 ◆ 총 지원 3,684억원 (국고지원 2,750억원)	◆ 취업 3,983명 ◆ 졸업 4,442명 ◆ 연구인력 : 15,119명	◆ 논문 24,817편 ◆ 특허 3,255건 ◆ 기술지도 11,695건

양적인 성과는 달성되었으나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에 맞게 사업추진 전략의 유연성 부족
- 소규모 투자로 인하여 지역산업체의 인력수요 대응 미흡

' 13년 시범과제 등 추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 사업수행 방식 및 체계의 다양화를 통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추진

5

Ⅰ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개요

6. 2014년 예산계획

14년도 투자계획 : 14개 권역 27,580백만원 지원 (13년도 동일)

– 사업비 : 26,080백만원, – 평가비 : 1,500백만원

구분	권역 (14권역)	'13년 예산 (과제수)	'14년 예산		비고
			계속(과제수)	신규(과제수)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사업비)	강원 권역	2,159(13)	1,424(9)	8,375(51)	
	경남 지역	2,139(13)	1,429(8)		
	경북 지역	2,400(15)	1,820(11)		
	광주지역	3,040(22)	1,880(13)		
	대구지역	1,739(12)	1,159(8)		
	부산지역	3,822(23)	2,662(16)		
	울산지역	966(6)	686(4)		
	전남제주(제주)	1,499(10)	829(5)		
	전북지역	1.609(10)	1,169(7)		
	대전/충남/충북/세종	4,647(41)	4,647(28)		
	취업지원금	200(-)	-		폐지
	소 계(a)	26,080(165)	17,705(109)	8,375(51)	
평가관리비(b)		1,500	1,500	-	
총 계(a+b)		27,580(165)	27,580(160)		

6

Ⅰ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개요

7. 2014년 추진방향

지방대학연구역량강화 및 지역기업체 기술경쟁력강화

수요 맞춤형 대학고급인력양성 | 기업수요기술기반 혁신기술개발 | 지역경제활성화 기업/대학협력

중점추진방향

연구현장 공감형 환경 및 연구자 편의성 강화
- 연구관리제도및 연구비 집행방식 개선
- 수요자 중심의 연구관리 절차 간소화

창의적 융합연구수행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 참여주체 확대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 우수성과 활용 촉진 및 후속연구지원 체계 구축

연구성과 활성화 위한 지속적 사업수행
- 지역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역잠재력 확충을 통한 성화활용/확산 촉진

7

Ⅰ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개요

7. 2014년 추진방향(2)

(1) 연구현장 공감형 환경 조성 및 연구자 편의성 강화

- 연구현장 몰입형 사업관리 및 행정규제 완화
  - 평가서류 간소화, 전산화를 통한 연구자 부담완화
  - 사업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한 사업관리 구체화 체계화
- 연구현장 친화용 연구비 기준 완화
  - 다년도 체결 확대 및 연구비 집행 기준 완화
-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설명회/간담회 개최
  - 지역발전 관련 연구계/산업계 대상으로 상시 간담회 개최
  - SNS를 활용한 사업제도 개선 실시간 알림 서비스 구현 등

8 8

Ⅰ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개요

7. 2014년 추진방향(3)

(2) 창의적 융합형 연구수행을 통한 우수연구인력양성

- 융복합형 과제유형 도입을 통한 신기술 창출형 R&D 시범과제 추진
  -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융복합형 시범사업
- 우수성과 전시 및 우수과제 추가연구 지원
  - 지역별 대표연구성과 선정 및 사례집 발간/배포
  - 시범과제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평가를 통하여 후속연구 지원.
  - 취업지원금 폐지/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
- 질적연구수준과 성과중심 평가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지역발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전담평가 후보단 활용
  -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 점검을 평가와 연계/개방화 함으로써 성과활용 촉진

9 9

Ⅰ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개요

7. 2014년 추진방향(4)

(3) 연구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안정적 사업수행

-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역기업과 대학의 능력을 상호 매칭형 사업관리 컨설팅 수행
  - 지역거점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확대 등 추진
- 기술료 제도 및 기술이전 인센티브 강화
  - 의무 기술료 납부제도는 지속적 면제
  - 대학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체결을 장려하는 등 사업의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지역기업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10 10

Ⅰ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개요

8. 2014년 개선사항(요약)

없어집니다	생겨납니다	이루어집니다
○ 획일적으로 설정된 목표대비 정량(50%)+정성(50%) 평가 시행	○ 연구성과 중심의 질적인 수준 측정을 통한 평가실시	○ R&D 창의성/혁신성 기반 성과제고
○ 학부생 참여 및 취업지원금	○ 대학원 이상 참여 및 성과기반 인센티브 계상	○ 지역발전을 위한 고급인력양성
○ 단년도 협약 통한 사업관리	○ 다년도 협약체결을 통한 연구비 관리 유연성 제고	○ R&D추진에 따른 연구비관리 상관성 및 유연성 제고
○ 정밀정산 전수 및 40% 실시 ('12년 전수/'13년 44%)	○ 연구비 카드제 시행으로 인한 정밀대상 축소 시행	○ 연구현장 고객만족도 제고 - 연구관리 컨설팅 강화

11

Ⅱ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신청요강

Ⅱ.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신청요강

1.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및 요건 (1)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 · 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가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2년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또는 매출액 3억원 이상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성한 '사업팀' 신청
  주관사업기관은 대학으로 함.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 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권 역	충 청 권	동 남 권	대 경 권	호 남 권
광역경제권	대전, 충북, 충남 (세종포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특별경제권	강원	제주	강원	제주

예) 제주대는 호남권, 동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13

Ⅱ.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신청요강

1.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및 요건 (2)

- 대응자금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1명 이상, 학생연구원*은 5명 이상 참여해야 함(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 * 학생연구원: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
  - ※ 주관사업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 가 아닌자

Ⅱ.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신청요강

1. 신청대상

나. 기타 제한사항(1)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 구성 불가
  -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사업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은 '학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 가 아닌자로서, 주관사업책임자의 경우 대학은 조교수 이상,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임원급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사업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Ⅱ.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신청요강

2.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 의료, 에너지 · 자원, 지식서비스

3. 선정절차(1)

가. 요건심사(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이 접수된 과제의 주관사업기관, 주관사업책임자, 협동사업기관, 협동사업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Ⅱ.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신청요강

3. 선정절차(2)

나.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SP))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10개 지역거점기관에서 지원
  - ※ 대전 · 충남(세종 포함)은 충북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 수행
  - ※ 선정평가(발표평가)시 주관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동사업책임자 배석)
  - -' 14년 온라인 평가를 통하여 "사전평가 강화" 통하여 연구자 편의성 제고

다.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평가를 통해 추천된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 광역시 · 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주관사업 기관 기준)

Ⅱ.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신청요강

4. 과제배분

- 14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지역별 과제 배분 기준>

① 시·도별 과제신청 건수, 석·박사과정생 수를 6 : 4의 비율로 고려해 배분

$$\text{지역별 과제 수} = \left(\frac{\text{해당지역 과제신청 건수}}{\text{전체 과제 신청 건수}} \times 6 + \frac{\text{해당지역 이공계 석·박사생 인원}}{\text{전체 이공계 석·박사생 인원}} \times 4 \right) \div 10$$

② 배분 잔여액은 지역별 선정률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분

③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제선정시 특정 대학에 50%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5. 협동기관 매칭기준

협동사업기관/기업은 아래와 같이 대응자금을 투자해야 함

- 대기업-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 5% 이상 현금 대응투자

Ⅱ.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신청요강

6. 사업비

-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의 4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참여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구 분	최소(인건비 하한선기준)	최대 (참여율 100% 기준)
석사과정생	80만 원	180만 원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120만 원	250만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 인건비 상·하한선 준수

- 직접비 및 간접비 집행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준수

7. 사업의 효율성 강화

-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실습에 대한 계획 반영

Ⅱ.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신청요강

8. 문의처

※ 10개 지역거점기관 평가 실무 담당기관 연락처(평가 일정/방법 등)

주관사업 기관 소재지	지역거점기관 (지방과학연구단지,SP)	주 소	담당자 (연락처)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박영훈 연구원 033-650-3315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7번지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5층 행정실	황철준 연구원 055-259-3365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1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박성원 연구원 054-479-1801
광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영기획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107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3층 법인사무실	정주리 연구원 062-609-0313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대구 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 대구융합R&D센터 436호	김경하 연구원 053-589-4774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지사동)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정책기획단	최준명 연구원 051-974-9135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2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1층	안성규 연구원 052-219-6638
전남, 제주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사업운영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8번지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김학형 연구원 061-460-5223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사업단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4-9	장한종 연구원 063-710-7522
충북, 충남,대전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팀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97(643-6번지)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103호	김윤호 차장 043-210-0841

III

2014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이공분야)

Ⅰ. 학술·연구지원사업 개 요

1. 추진 근거 및 체계

□ 사업 추진 및 관리 근거

○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 학술진흥법 >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이공분야 교육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추진 경과

○ ('63)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79) 「학술진흥법」 제정

○ ('01) "기초학문 발전방안" 마련 추진

○ ('05)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인문사회와 기초과학으로 분리

○ ('05) 「학술진흥법」이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 ('07) "인문학진흥사업" 신규 추진

○ ('08) (舊)교육과학기술부 창설(교육인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통합)

○ ('09) 학술연구조성사업 사업구조 개편

※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 기초연구, 리더연구, 기반연구를 인문사회학술역량 강화사업으로 통합

※ (舊)한국학술진흥재단 및 (舊)한국과학재단 등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보호학문 연구지원, 중점연구소사업 조정.개편

○ ('10)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現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신설

○ ('1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 「학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 ('12)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추진 구조 개편

※ 개인연구군/집단연구군/성과확산군/국제교류군으로 구조화

○ ('1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교육과학기술부의 **일부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 교육부 이관

* 일반연구지원사업('13년 3,035억원),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13년 427억원) 등

○ ('13)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련 규정 정비 및 사업 체제 정비

※ 인문사회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전부 개정,
이공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

□ 추진체계

○ **(교육부)** 학술진흥 **종합계획**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 연도별 종합계획은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

○ **(전문기관)**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과제 선정 및 협약, 사업비 집행, 선정 및 결과 평가, 정산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 관리**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 **(주관연구기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학술·연구 관련 업무 지원

※ 주관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학회 등

< 사업 추진 체계 >

계획 수립 및 사업 위탁	학술 · 연구진흥 종합계획 수립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교육부(종합심의위원회)
	⬇	
	사업 위탁	•교육부→전문기관 (위탁협약)
	⬇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전문기관
	⬇	
사업 수행	과제 신청 접수	•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공고 및 연구비 지원	•전문기관
	⬇	
	연구수행 및 사업관리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	
성과 관리	성과 확산 및 사후 관리	•교육부/전문기관

2. 사업구조 및 분야별 주요사업

◈ 조직개편으로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문사회** 및 **이공**을 아우르는 **학술·연구 지원 체계 확립**

□ 사업 구조

○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 분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을 **구조화**

- 동 구조내에서 **개인-공동-집단**으로 **사업**을 **분류**

- **학문후속세대**(석·박사 및 박사후) 및 **신진-중견-우수학자**로 이어지는 **경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국제교류, 학술·연구 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연구자의 **학술활동**과 **연구지원**을 **뒷받침**

< 사업 구조 및 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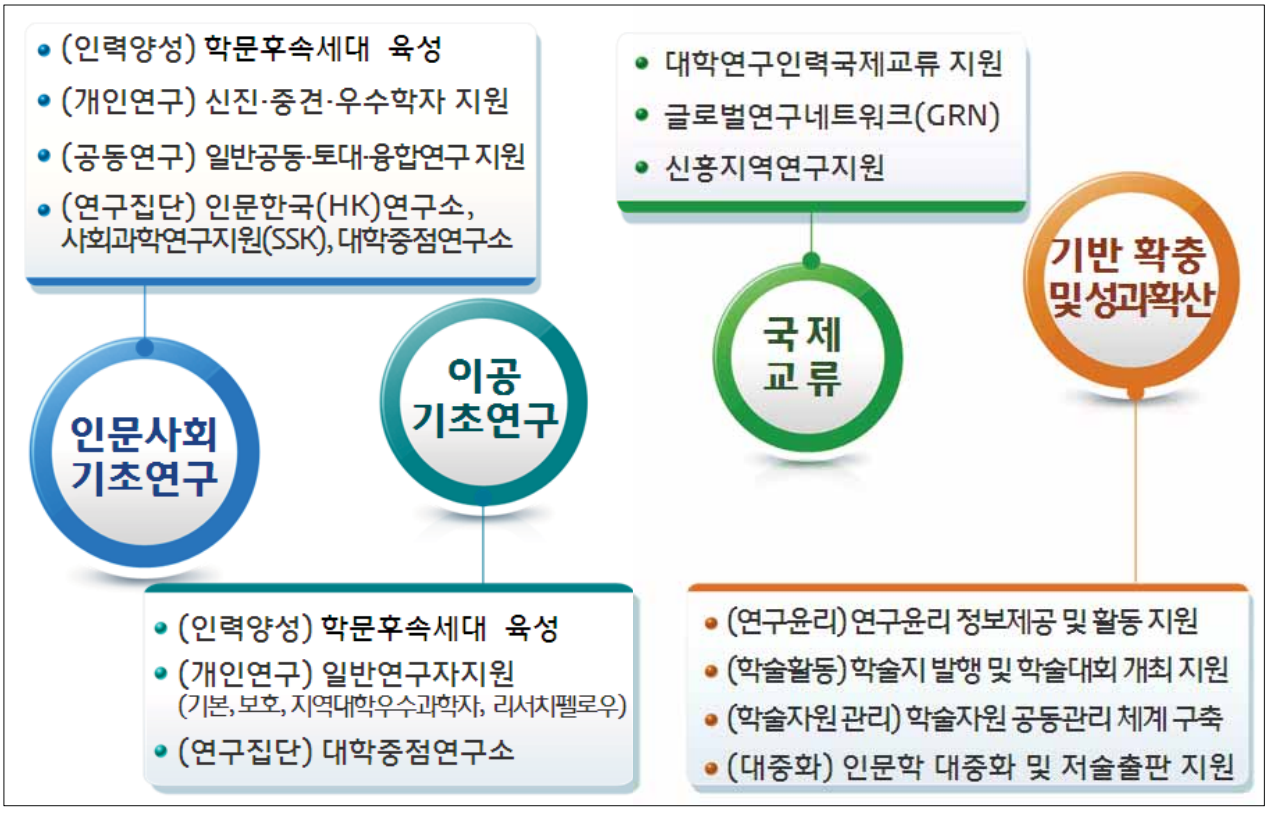

□ 분야별 주요사업

【이공분야 연구지원】

○ **(일반연구자지원)** 이공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과제**(연50백만원/3년/자유공모방식)를 **폭넓게 지원**

※ 기본연구, 보호연구, 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이공학학술연구기반조성)** 특성화된 **대학중점연구소**를 **지원·육성**하는 동시에 **미래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양질의 **연수기회 제공**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박사후 국내·외 연수, 대통령Post-Doc. 펠로우십

[참고] 사업 개요

[이공(과학기술) 분야]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단가 (백만원/연)	지원기간 (연)
개인	기본연구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 연구지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50	3 이내
	보호연구	이공분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의 연구 지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50	3 이내
	리서치펠로우 연구지원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고용연구원 (고용예정자 포함*)	50	3 이내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역대학의 역량 있는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	지역대학 (5대 과기대**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50	3 이내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국내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 제공	국내 · 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5년이내인 자	33	1
	박사후 국외연수	박사후 연구자에게 해외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선진 연수기회 제공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5년이내인 자	33	1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연구역량이 탁월한 젊은 박사후 연구자의 초기 일자리 정착과 연구비 지원	국내 · 외 대학 박사 학위 취득 연구자 중 만39세 이하이거나 박사학위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150	5 (3+2)
집단	대학중점 연구소지원	대학연구소 지원을 통해 대학에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소를 중심으로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여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대학 부설연구소	500 이내	9 (3+3+3)

* 대학의 리서치펠로우 고용 확약을 받은 박사후 연구원

** KAIST, POSTECH, GIST, DGIST, UNIST

Ⅱ. 2013년
추진 실적 및 성과

1. 지원 실적

□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자 육성**을 위해 **매년 총 6천억원 규모**의 학술·연구 지원 추진

○ '13년은 총 **6,045억원**으로 '12년 5,894억원 대비 **151억원 증가(2.6%↑)**

□ '12년 대비 '13년에는 **인문사회분야(1.4%), 이공 분야(3.5%)** 및 **학술기반 확충(5.8%)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국제교류 예산(△3.2%)**은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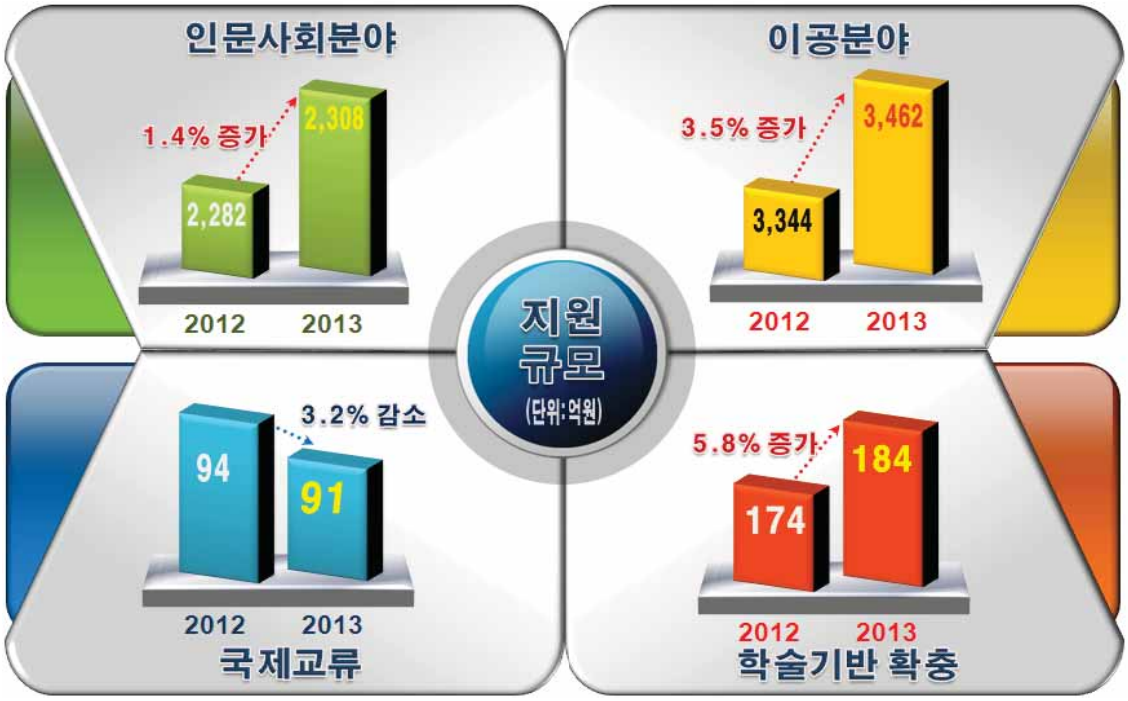

2. 지원 성과

□ **(이공)**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을 통해 양적으로 **SCI 논문 숫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 **개별 논문**의 **평균 IF**(Impact Factor)도 **향상**

사업명		SCI 논문 수(편)		
		2010	2011	2012
일반 연구자	기본연구, 보호분야, 리서치펠로우	3,335	5,380	5,700
	지역대학	397	405	450
학문후속세대양성		403	346	260
중점연구소		857	1,176	1,135
계		4,992	7,307	7,545

사업명		학술지 영향력 지수(IF)		
		2010	2011	2012
일반 연구자	기본연구, 보호분야, 리서치펠로우	2.82	2.68	2.68
	지역대학	2.20	2.56	2.10
중점연구소		2.63	2.78	2.91

3. 주요 제도 개선 실적

□ 학술·연구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13.6.)하여 "법률-대통령령-부령"으로 이어지는 **학술진흥 법적 기반 완성**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 (제2조, 제7조) 사업비 비용항목별 계상기준 및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 제5조, 제6조) 결과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 학술활동 결과 보고 기한 확정

○ 정부조직법 개정('13.3.)에 따라 신설된 교육부의 **이공분야 연구지원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

□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 평가자 **이력** 및 **실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참여도**와 **성실도**를 **추적 관리**하고, **우수평가자 풀**(pool)을 **구성**

□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및 창의연구 지원 강화

○ 이공 분야 "**한국형 grant 제도**"를 **개인연구과제 전체**로 **확대**하여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 **리서치펠로우 지원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잠재적 역량**을 **연구성과로 연결**

* 혁신도약형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 : 학문적 발전 등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전성·창의성을 중심으로 선정

Ⅲ. 2014년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1. 학술·연구지원사업 진단

□ 학술·연구지원사업 평가

○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를 아우르는 총 **6천여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식국가" 진입 기반 확보**에는 성공

- 아울러 **지속**적인 **제도 개선, 사업 구조 개편** 등을 통해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꾸준히 **제고**

○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 및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을 **연착륙**시키고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정비**

<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이관 현황 >

사업	교육부		미래부	
	세사업	예산	세사업	예산
일반연구자 지원	기본연구, 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935	모험연구, 커리어과학자, 우수신진연구, 여성과학자	1,461
중견연구자 지원	–	–	핵심연구, 도약연구	3,220
기초연구 기반구축	학문후속세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427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기초연구실험데이터허브구축,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	84
총계	3,362		4,765	

○ 다만, **연구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수혜율)는 아직 **부족**한 상황

- 특히 이공분야 대비 **인문사회 분야**의 **지원 규모**가 **전체 예산기준 1/10 수준**으로 격차가 심각

- 매년 **이공**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수**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연구 현장**에서 **선정률**에 대한 **불만**을 제기

□ 정책 여건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학술연구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창조경제** 실현의 **원천**이 되는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이와 함께 **융합**연구, **패러다임 전환**형 연구 등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지원**도 절실

○ "**국민행복**", "국가정체성 회복" 등 **시의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고, 학술·연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증가**

-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인문학**의 **역할**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간의 **연구지원 성과 활용**에 대한 **요구 확대**

※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인문·정신문화 진흥"이 설정

- **동북아 관계, 영토 문제** 등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사 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성** 제고 필요

- 그간의 연구성과를 **미래예측, 사회문제 해결**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급선무**

○ **장기적 관점**에서 **학술·연구**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연구저변**을 **확충**하고 **인재양성 체제**를 **정비**할 필요

2.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연구자 양성"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실현**의 **원천 창출**

◈ **학술·연구지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

가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연구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창의적이나 실패위험이 높은 아이디어의 초기 연구 지원

○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구조**로서 이공분야 **"한국형 SGER*" 시범 실시**

* 한국형 SGER : 에세이 형식으로 연구 아이디어를 수시로 접수 받아 이에 대해 전문가(PM)가 평가하고, 최적의 연구자를 추천하여 별도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패가능성을 전제로 보다 창의적·실험적 연구과제를 발굴·지원

□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수**를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4년에 신규과제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2.5년**으로 **조정***

* 지원기간 조정시 '14년 신규과제 수 변화 : 550여개 → 1,100여개

* 지원기간 유지시 신규과제 수 추이 : ('14) 550여개 → ('15) 2,180여개
한시적 지원기간 조정시 신규과제 수 추이) ('14) 1,100여개 → ('15) 1,630여개

□ 과제평가시 아이디어 중심의 "창의성" 항목 비중 제고

○ 학문특성을 감안하여 **연구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연구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연구계획**으로 **실현**하기 **용이**하도록 개선

나 연구여건이 열악한 연구자 지원 확대

□ 지역대학의 연구여건 개선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신규과제를 **모두 지역대학**에 **할당**하고, **리서치펠로우 연구지원 신규 과제**를 지역대학 중점 배정

* 이공중점연구소 신규 4개 과제 내외 34억원, 리서치펠로우 연구지원 신규 45개 과제 22억원

○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지역대학 연구자**를 **우대**

※ 동점자가 모두 지역대학 연구자일 경우 여성, 연구업적 등을 고려

□ 창의·소외 및 융합 학문 분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이공분야 연구 지원에서 **소외·보호학문 및 창의적 연구, 융합연구 별도 지원**

(보호분야 지원) 이공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규 6개 과제

라 학술·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체제 개선

□ 연구중단 및 조기종료 과제 최소화

○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

- **인건비 지원 성격**의 **사업**은 **사업비를 연구비**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신분변동 후에도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 계속**

※ 지역대학우수과학자의 수도권 이직에 한하며 잔여 연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계속 지원

○ 연구자 귀책사유로 연구 중단시 책임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지급 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고, 일정기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

* 연구비목 중 연구수당(능률성과급) 부분을 환수하는 방안 검토

□ 연구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 관리 강화

○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한 **경감** 및 **해제**시 반드시 **별도**의 **심사(심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

* 현재는 연구결과 미제출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기간이 경과하여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

○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한 **이력 관리** 추진

마 학술·연구 성과 확산 강화

□ 교육부 우수성과 50선 선정 및 성과집 발간

○ 교육부 학술·연구 **우수성과 50선**을 **선정***하고, **성과자료집을 발간**하여 연구자간 공유·확산

* 우수성과 50선 연구자 및 연구집단에 대해 장관표창 수여 추진

○ 아울러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 신청**시 **우대***

* (인문사회) 선정평가 점수 만점 기준 3% 이내의 가산점 부여
(이공) 전문가평가 획득 점수 기준 3% 이내의 가산점 부여

[참고1] 사업별 주요개선 사항

[이공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 제도 개선 및 중점 추진 내용	
		현행	개선
개인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박사후국내·외연수, 대통령 Post.Doc)	■ 전임교원으로 임용시 인건비(0.5억원)를 연구비로 전환하여 지원	■ 대통령Post-Doc. 수혜자 정규직 취업시 **인건비 지원 중단** 및 연구수행 전념 기준 완화(1책→3책5공)
		■ 별도 우대 없음	■ 학문후속세대 수혜자가 후속사업 신청시 우대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	■ **기본**연구 **신규**과제의 **5%** 내외에서 **"한국형 SGER"** 시범 추진
		■ 지원기간 3년	■ '14년 기본·보호연구 신규과제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2.5년**으로 **조정**
집단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지원	■ 지방대학 우대 없음(신규과제 없음)	■ '14년 신규과제(4개)는 지방대학 부설연구소를 선정
		■ 전임연구인력 인건비를 중점연구소 사업비에서 전액 부담	■ 타 연구과제 참여에 따라 전임연구원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참고2] 2014년 예산 및 지원 규모

[이공분야]

(단위 : 백만원, 개)

주요사업	세사업	예산		과제수	
		'13	'14	계속	신규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기본연구	240,827	230,750	4,325	1,100
	보호연구	2,173	1,500	26	6
	리서치펠로우연구지원	32,500	33,250	616	45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8,000	25,000	408	100
이공학학술연구 기반조성	박사후 국내연수	3,960	3,960	–	120
	박사후 국외연수	3,870	1,980	–	60
	대통령 Post. Doc 펠로우십	8,250	11,250	54	21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6,624	23,680	36	4

[참고3] 주요사업 추진 일정(과제 신청 캘린더)

시기	인문사회	이공	국제교류	기반 확충 및 대중화
1월	■ 신규과제 신청공고 (인문사회)	■ 상반기 신규과제 신청 공고 (지역대학, 리서치 펠로우, 학문후속)	■ 신규과제 신청공고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 글로벌연구네트워크)	
2월	■ 신규과제 접수 (박사후국내, 학술연구 교수, 신진, 중견, 우수학자) ■ 계속과제 접수 (신진,중견,우수학자, 저술출판)	■ 상반기 신규 과제 신청접수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학문후속) ■ 계속과제 접수 (기본연구, 지역대학)		■ 학술단체지원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신청 공고 (인문사회, 이공)
3월	■ 신규과제 접수 (저술)	■ 신규과제 신청 공고 (중점연구소) ■ 계속과제 접수(기본연구,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 신규과제 접수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	■ 신규 과제 신청·접수 (인문사회 학술대회, 학술지 지원) ■ 석학인문강좌 개강
4월	■ 신규과제 신청공고 (SSK) ■ 계속과제 접수 (박사후국내, 학술연구교수)		■ 신규과제 접수 (글로벌연구네트워크)	■ 학술대회, 학술지 지원 선정평가(인문사회)
5월	■ 신규과제 연구개시 (신진, 중견, 우수학자,) ■ 계속과제 연구개시 (신진, 중견, 저술출판) ■ 신규과제 접수 (시간강사, 중점연구소, 학제간융합, SSK) ■ 계속과제 접수(HK)	■ 상반기 신규 과제 선정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학문후속) ■ 신규과제 신청접수 (중점연구소) ■ 계속과제 연구개시 (기본연구, 지역대학)		■ 신규 과제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이공계 학술대회, 학술지 지원) ■ 신규과제 신청공고 (인문학대중화)
6월	■ 신규과제 신청접수 (일반공동, 토대연구, 명저번역) ■ 계속과제 접수 (일반공동, 토대연구, 중점연구소, HK, 학제간융합, SSK)	■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 (기본, 보호, 학문후속) ■ 상반기 신규과제 연구개시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학문후속) ■ 계속과제 연구개시 (기본연구,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 계속과제접수(기본연구, 지역대학,리서치펠로우)	■ 계속과제 접수 (GRN, 신흥지역)	■ 학술대회, 학술지 지원 선정 결과 발표(인문사회) ■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 보급 학술단체 신청·용역업체 공고 ■ 신규과제 접수 (인문학대중화)

시기	인문사회	이공	국제교류	기반 확충 및 대중화
7월	■ 신규과제 접수 (우수논문) ■ 신규과제 연구개시 (박사후국내, 학술연구교수, 저술출판,) ■ 계속과제 연구개시 (박사후국내, 학술연구교수) ■ 계속과제 접수 (우수학자)	■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 접수 (기본연구, 보호 학문후속) ■ 계속과제 접수 ('11, '12년 선정 대통령 Post-Doc.)	■ 신규과제 연구개시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	■ 한국학 진흥사업 한국고전 100선 영문번역 결과평가
8월		■ 신규과제 선정 (중점연구소) ■ 계속과제접수(기본연구, 리서치펠로우)		
9월	■ 신규과제 연구개시 (시간강사, 일반공동, 토대연구, 중점연구소, 학제간융합, SSK, 명저번역) ■ 계속과제 연구개시 (일반공동, 토대연구, 중점연구소, 학제간 융합, HK, SSK,) ■ 계속과제 접수 (토대연구, 중점연구소)	■ 연구개시(중점연구소) ■ 계속과제 연구개시 (기본연구, 리서치펠로우) ■ 계속과제 연구개시 ('11, '12년 선정 대통령 Post-Doc.) ■ 계속과제 접수 ('13년 선정 대통령 Post-Doc.)	■ 신규과제 연구개시 (글로벌연구네트워크) ■ 계속과제 연구개시 (신흥지역)	■ 한국학 진흥사업 한국고전 100선 영문번역 연차평가 ■ 신규과제 연구개시 (인문학대중화)
10월	■ 계속과제 연구개시 (우수학자) ■ 계속과제 접수 (저술출판)	■ 상반기 신규 과제 선정 (기본연구, 보호, 학문후속) ■ 계속과제 접수 (기본연구, 지역대학)		■ 학술지 지원 계속과제 (우수학술지 및 학술지 외국어 발행) 연차 보고서 접수
11월	■ 신규과제 연구개시 (우수논문)	■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개시 (기본연구, 보호, 학문후속) ■ 계속과제 연구개시 (기본연구, 리서치펠로우, '13년 선정 대통령 Post-Doc.)		■ 학술지 지원 계속과제 (우수학술지 및 학술지 외국어 발행) 연차 평가 ■ 인문주간 및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12월	■ 계속과제 연구개시 (토대연구, 중점연구소, 저술출판)	■ 계속과제 연구개시 (기본, 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		■ 학술지 지원 계속과제 (우수학술지 및 학술지 외국어 발행) 계속 지원 여부 확정

Ⅳ.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이공분야

1.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사업
2.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3. 일반연구자지원사업

1.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이공분야 **박사후 연구자**에게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학술연구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학술진흥법」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추진경과

- ('82)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 시작(舊과학기술처)
- ('87) 박사후국내연수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01)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04) 해외연수 관련사업 교육부 이관
- ('06) 박사후 국내·외연수지원,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을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통합
- ('11) 우수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한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신설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규모	'14년 신규과제
박사후 국내연수	개인 (연수 지원)	이공학 全분야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후 5년 미만 경과자	공모	1년	33백만원** /연	120개
박사후 국외연수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후 5년 미만 경과자				60개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개인 (연수+연구비)		만 39세 이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5년 (3+2)	1.5억원*** /연	21개

* 1974.1.1일 이후 출생자(단, 40세 이상 연구자 중 박사학위 취득후 7년 미만 경과자 지원 가능)

** 연수활동비, 보험부담금, 퇴직금 포함

*** 연수활동비 0.5억원(보험금, 퇴직금 포함), 연구비 1억원

※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후국외연수,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별로 각각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단, '13년 이전 박사후국내연수 선정자는 '14년에 1회에 한하여 재수혜 가능)

□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10		'11		'12	
	SCI급 논문수	비SCI급 논문수	SCI급 논문수	비SCI급 논문수	SCI급 논문수	비SCI급 논문수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403	195	346	159	260	102

□ 기대효과

○ 국가경쟁력 구축의 기반인 **우수 과학기술인적자원**의 **지원**을 통해 **신규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역량 제고**

○ 국내·외 취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미래 학문후속세대**에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자리** 및 **연구환경 창출**

○ **연구자 생애주기**(학문후속세대→신진연구자→중견연구자→리더연구자)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우수연구성과 창출**

나 2014년 사업계획

◇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수혜자**가 **정규직 취업**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 **연구수행 전념 기준***을 **기존 1책**에서 **3책5공**으로 **완화**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급·공동급 과제의 수

◇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및 박사후국외연수 등 **교육부 연구지원 사업**간 **연계**를 강화

※ 박사후국외연수 수혜자는 대통령 Post-Doc. 신청시, 박사후 국내·외 연수 수혜자는 일반연구자사업 신청시 우대('14년 박사후 국내·외연수 선정자부터 적용)

□ 신규과제 선정

○ 사업별 신청자격

- (박사후국내연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후 5년 미만 경과자 ('09.1.1일 이후 취득자)
- (박사후국외연수)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후 5년 미만 경과자 ('09.1.1일 이후 취득자)
-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만 39세 이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 단, 40세이상 연구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미만 경과자 지원 가능

○ 평가절차 및 단계

- 박사후 국내·외 연수

① 사전 검토		② 전공 평가		③ PM 협의체		④종합심사
연수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	1) 온라인평가 2) 패널심의	⇒	신규과제선정(안) 마련	⇒	신규과제선정(안) 최종 심의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① 사전 검토		② 전공 평가		③ 발표 평가		④종합심사
연수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 ⇒	토론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 ⇒	발표평가 및 PM협의체 심의(안) 마련	⇒ ⇒	신규과제선정(안) 최종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대통령 Post-Doc.펠로우십에 한해 토론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 선정자(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세부사업	평가항목
박사후 국내·외연수	■ 연수자의 우수성 ■ 연수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 연수기관의 적합성 및 우수성 등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 연구자의 잠재력 ■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 연구기관 지원의 적정성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 가능

□ 계속과제 관리(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 연차점검

- (점검 대상) '12년, '13년 선정된 **40과제**

- (점검 방식)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PM중심의 전문평가단 점검**

* 연차별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

① 연구보고서 접수		② 연차점검		③ PM협의체
연구결과 제출 (종료 2개월 전)	⇒ ⇒	온라인 점검	⇒ ⇒	차년도 연구비 및 지원여부 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결과 활용) 점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및 **차년도 연구비 조정**

○ 단계평가

- (평가 대상) '11년 선정된 **14과제**

- (평가 방식)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전공심사 및 종합심사 추진**

* 1단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

단계	평가구분	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심사	■ 1단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2단계 연구계획 평가	전공심사단
2단계	종합심사	■ 1단계 결과 검토 및 2단계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심사단

- (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확정**

□ 종료과제 성과관리

○ 성과관리 대상 : '13년 선정 박사후 국·내외 연수 240과제

○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으로 연수결과보고서(3쪽 내외)를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박사후국내연수자는 연수결과보고서만 제출

※ 박사후국외연수자는 ①연수결과보고서(지도교수의견서 포함), ②출입국현황, ③진로현황 제출

○ 연수 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연수자가 **추후 과제 신청**시 기존 연수 **성과**를 신규과제 **평가**에 **반영**

※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지원시 박사후국외연수자 우대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4.1월	■ '14년도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 '14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사업공고
'14.2월	■ '14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신청접수
'14.3월～4월	■ '14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평가
'14.5월	■ '14년도 상반기 신규과제(박사후연수) 선정
'14.6월	■ '14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연수개시 ■ '14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사업공고
'14.7월～8월	■ '14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접수 · 선정평가 ■ '11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계속과제 단계평가 ■ '12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계속과제 연차점검
'14.9월	■ '14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평가 ■ '11～'12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연구개시
'14.9～10월	■ '14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 ■ '13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연차점검
'14.11월	■ '14년도 하반기 신규과제(박사후연수, 대통령Post-Doc.) 연수개시 ■ '13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연구개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3년 실적	2014년 계획
박사후국내연수	예산	3,960	3,960
	과제수	120 (신규 120)	120 (신규 120)
박사후국외연수	예산	3,870	1,980
	과제수	118 (신규 118)	60 (신규 60)
대통령Post-Doc. 펠로우십	예산	8,250	11,250
	과제수	55 (신규 20 / 계속 35)	75 (신규 21 / 계속 54)

2.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 **중점연구소**가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추진경과

- ('80)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94) 중점연구소와 우수연구소로 분리 지원 시작
- ('99)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실시(연간 2억원 이내, 3단계 6년) 및 신청 조건 강화(대응투자, 공간확보, 대학의 육성의지 확인)
- ('05) 현재 대학중점연구소 사업모델* 완성

* 이공계 연 5억원, 인문사회 연 2.3억원 이내, 3단계 9년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규모	'14년 신규과제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집단 (연구지원)	이공계 全분야	이공계 대학부설연구소	공모	9년 (3+3+3)	5억원이내 /연 (간접비 별도)	4개

※ 단계별 1차년도에 특별지원기자재 구입비 지원(1단계 2억원이내, 2~3단계 1억원 이내)

※ 추가지원조건 : 정부출연금(직접비)의 10%이상 산업체 등 대응자금 투자 필요

□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10		'11		'12	
	SCI급 논문수	비SCI급 논문수	SCI급 논문수	비SCI급 논문수	SCI급 논문수	비SCI급 논문수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859	190	1,176	241	1,135	219

□ 기대효과

○ 성장가능성이 큰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장기지원**(9년)함으로써 **지역**의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자립가능성 확보**

- 특히 **대학 스스로 육성방안**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화 연구소**로 **발전 가능**

○ 연구소가 **전임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인력**에게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젊은 우수연구자 육성**

나 2014년 사업계획

◇ '14년 **신규과제**(4개)는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전문화**가 가능한 **지방대학 부설연구소**를 **선정**

◇ 타 연구과제 참여에 따라 **인건비 지원 비율**이 **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소의 자립성 제고**를 위해 **전임연구인력**의 **장기근속환경 조성**

□ 신규과제 선정

○ 신청자격

- 지방대학* 부설연구소 중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연구소(대학별 1개 신청 가능)

* 수도권 소재 대학 및 5대 과학기술대학(KAIST, POSTECH, GIST, DGIST, UNIST)을 제외한 대학

○ 평가 절차

- 평가 단계

①사전검토		②패널 및 발표평가		③종합심사
신청자격 등 검토	⇒	1) 패널평가(50%)	⇒	선정결과
	⇒	2) 발표평가(50%)	⇒	최종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발표평가는 패널평가 결과 상위 2~3배수(최종 선정예상 과제 기준) 과제만 시행

※ 최종심의에서는 패널평가 및 발표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합산

- 평가 항목 : 연구소 기반구축, 연구수행 및 인력활용·양성 계획 등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연구개시 : '14. 9. 1.

□ 계속과제 관리(연차점검)

○ 점검대상 : '07~'12년 선정된 **36개** 연구소

※ '07년 선정 8개, '09년 선정 18개, '10년 선정 8개, '12년 선정 2개

○ 점검방식 : 연차실적계획서를 바탕으로 PM 점검

○ 점검내용 : 당해연도 **목표 대비 실적**, 차년도 연구계획 및 **연구비 계상의 적절성** 등 검토

○ 결과 활용 : 점검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조정**

□ 종료과제 성과평가

○ 평가대상 : '05년 선정된 9개 연구소

○ 평가단계 및 절차

발표평가		평가심의
연구실적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 ⇒	PM협의체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평가항목 : 최초 계획 대비 대학의 **지원실적**, 성과**목표 달성도**, 연구과제 수행결과, 정부**지원 종료 후의 연구소 운영 계획** 등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결과활용

- 평가결과가 **60점 미만**(100점 기준)인 **연구책임자**는 향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사업 관리 사항 개선

○ **대학중점연구소 사업비**에서 **전액 부담**되던 **전임연구인력 인건비**를 **타 연구과제 참여**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4.3월	■ '14년도 사업 공고 ■ '10년도 선정 계속과제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및 점검
'14.5월	■ '10년도 선정 계속과제 연구 개시 ■ 신규과제 신청 접수
'14.6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14.7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속 ■ '07년, '09년, '12년 선정 계속과제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및 점검
'14.8월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07년, '09년, '12년 선정 계속과제 협약체결
'14.9월	■ 신규과제 및 '07년, '09년, '12년 선정 계속과제 연구개시
'14.10월	■ '05년도 선정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접수
'14.11월	■ '05년도 선정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평가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3년 실적	2014년 계획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예산	26,624	23,680
	과제수	45 (계속 45)	40 (신규 4 / 계속 36)

3.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변혁적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

○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지원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및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및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추진경과

- ('89)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교육부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착수
- ('04)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등 순수기초연구사업 소관부처 변경((舊)과기부→(舊)교육부)

※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 방안'에 의거 변경

- ('09) 이공학분야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사업,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일반연구자지원사업으로 개편
- ('13)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 미래부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분리 이관

※ (교육부) 기본, 보호, 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 / (미래부) 신진, 여성, 커리어 등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규모	'14년 신규과제	연구 개시
기본연구	개인 (순수연구 지원)	이공학 全분야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연구자	공모	3년***	5천만원/연 (간접비 포함)	1,100개	하반기 (11.1)
보호연구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연구자				6개	
리서치 펠로우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고용연구원 (고용예정자 포함*)				45개	상반기 (6.1)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역대학 (5대 과기대**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100개	

* 대학의 리서치펠로우 고용 확약을 받은 박사후 연구원

** 지역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이며, 5대 과기대는 KAIST, POSTECH, GIST, DGIST, UNIST을 의미

*** '14년에 선정되는 기본연구 및 보호연구의 경우 2.5년 지원('15.5.1일 2년차 연구개시, '17.4.30일 연구종료)

□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10		'11		'12	
	SCI급 논문수	연구성과물 IF	SCI급 논문수	연구성과물 IF	SCI급 논문수	연구성과물 IF
기본연구, 보호연구, 리서치펠로우	3,335	2.82	5,380	2.68	5,700	2.68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397	2.20	405	2.56	450	2.10

※ SCI급 논문 : SCI(E)

※ IF(Impact Factor) : SCI 발표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영향력(인용지수 등)

□ 기대효과

○ 이공분야 연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성과**로 **연결**하여 **창의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 신진연구자, 지역대학 연구자 등 상대적으로 **연구환경**이 **열악**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나 2014년 사업계획

◇ 기본연구 **신규과제**의 **5% 내외**에서 **창의적·변혁적 연구**의 **초기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SGER***" 시범 추진

*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 : 프로그램 관리자의 재량으로 별도 평가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실패위험이 높은 고위험 연구에 지원하는 제도

◇ '14년 **신규**로 **선정**되는 **기본**연구 및 **보호**연구의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2.5년**으로 **조정**하여 **과제 선정률 제고**

* 조정 후 신규과제수 : 550개 → 1,100여개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공통사항】

○ 기본사항

- **기본연구, 보호연구, 리서치펠로우 및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을 포함한 4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
- **리서치펠로우** 및 **지역대학우수과학자**는 **상반기**(6.1일 연구개시), **기본연구** 및 **보호연구**는 **하반기**(11.1일 연구개시)에 신규과제를 선정

※ 기본연구 및 보호연구는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2.5년으로 조정

- 과제는 원칙적으로 **자유공모 방식**으로 의해 **선정***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통해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SGER프로그램 등은 선정평가에서 일부 예외

○ 신청자격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이공학 분야 연구자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및 **미래부 신진연구자사업**(여성과학자 제외) 내에서는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1인 1과제 신청** 가능하며, **미래부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를 포함하여 1인1과제 수행** 가능

* 단,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 예외(사업개시일 기준)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연구수행전념(3책5공)의 적용 예외

【최초지원 과제】

○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사전 검토		② 전공 평가		③ PM 협의체		④종합심사
연수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 ⇒	1) 온라인평가 2) 패널심의	⇒ ⇒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 ⇒	신규과제선정(안) 최종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공평가)** 신청과제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PM이 해당분야의 **평가보고서**** 작성

  * 과제별 3인이상의 온라인 평가자가 4단계(A~D) 등급 부여

  ** (보고서 내용) 연구분야내 지원 우선순위,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적절성

- **(PM협의)**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분야 **PM의 협의**를 통해 **신규과제 예비선정**(안) 마련

- **(종합심사)** 예비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여 **종합심사**를 추진하고,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연구목표의 창의성·도전성	■ 추구하는 연구목표가 현안해결, 기존 지식 개선, 기존 원리의 새로운 규명,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지식, 완전히 새로운 발견/발명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성을 지향하고 있는가?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연구추진 체계(전략)가 적합한가? ■ 제안분야의 선행연구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진보되고 차별화된 연구계획을 제안하고 있는가?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목적이 달성될 경우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연구자 역량	■ 연구책임자는 교육 및 연구경력면에서 적당하게 훈련된 연구자로서, 제안한 과제를 실현시킬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수준은 제안한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기에 충분한가? ■ 연구책임자가 최근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연구업적은 우수한가?

【한국형 SGER】

○ 기본방향

- 기존의 정형화된 연구과제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구조**
- 과제 지원시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창의적·실험적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발상에 대한 사전연구(preliminary research),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의 연구, 혁신적인 진보를 촉진할 수 있는 연구 등

○ 지원 규모 및 기간

- **기본연구 신규과제 중 5% 내외**의 과제를 "한국형 SGER 프로그램"으로 추진(지원 기간 및 단가는 기본연구와 동일하게 설정)
-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지난 3년간의 연구성과** 및 **연구잠재력**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단, 지원기간 동안 다른 과제와 동일하게 과제 수행 실적 등에 대한 연차평가 실시

○ 과제 신청 및 접수

- **연중 수시**로 SGER 프로그램에 대한 **과제제안서 신청 접수**

  ※ 과제계획서는 기존의 형식이 아닌 5쪽 내외의 에세이(ESSAY) 형식으로 작성

  ※ 과제 주제(적합한 연구자 Pool 포함)는 외부 연구자 및 학회가 공개적으로 제안하거나 연구재단 전문위원(RB, CRB), 프로그램관리자(PM)가 추천

- 연구재단 전문위원(RB, CRB), 및 프로그램관리자(PM)는 외부에서 제안된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에 **적합한 연구자 추천**

  ※ 필요시 과제제안서 내용 수정·보완

- 기타 과제 **수행 연구자의 자격**은 **기본연구와 동일**하게 적용

○ 과제 평가 및 선정

- 평가는 **하반기 1회**에 걸쳐 **시행**(과제 접수는 수시시행)
- **재단의 PM협의체**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필요시 외부 전문가 심의 가능)

【우수성과 과제 후속연구지원(3+3 제도)】

○ 대상과제 : '14년 종료 예정인 과제(교육부 소관 기본연구 및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 선정규모 : 일반연구자지원 신규과제의 10% 수준(120과제 내외, 35억원 내외)

○ 평가방식 및 절차

- 평가절차

① 연구성과물 접수		② 선정평가		③종합심사
연구성과물 제출	⇒ ⇒	1) 학문단별 패널심의 2) PM협의체 선정(안) 마련	⇒ ⇒	최종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후속연구를 원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물**을 **온라인**으로 **제출**

※ (기본연구) 상반기 종료 연구자는 연구종료 후, 하반기 종료 연구자는 연구종료 3개월전까지 제출
(지역대학) 연구종료 3개월전까지 제출

- 제출된 성과물에 대해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학문단별 패널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과제 컨설팅

- 후속연구 선정과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학문단 컨설팅**을 통해 **연구 방법 등에 대해 일부 수정**

□ 계속과제 연차점검

○ 점검 대상

- '10～'13년에 선정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계속과제**

※ 총 5,375개, 2,558억원 규모

○ 점검 절차 및 내용

-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등 연구 진행 전반에 대해 점검

①관련 보고서 접수		②연차점검		③PM협의
연차실적 계획서 및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접수	⇒ ⇒	온라인 연차점검	⇒ ⇒	차년도 연구비 및 지원여부 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연차점검 결과조치

- 당초 목표 대비 **연구 실적이 불량**(미흡)한 경우 **지원 금액 감액**

- **연구실적**이 **과도하게 불량**하여 연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중단 여부는 PM협의 및 종합심사를 거쳐 확정

※ '11년 기본연구 "유형II" 선정 계속과제에 대해 5년(3+2)지원기간 중 단계 평가를 생략하고 연도별 연차점검을 통해 계속지원여부 및 차년도 연구비 결정

□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정부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자**에게는 **잔여기간**을 **지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과제 연구자가 수도권 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함

- 단, **잔여연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조기종료 처리 가능

○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환수**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종료과제 성과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간략한 **성과개요** 및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 소개서는 의무적으로 제출

○ 연구수행으로 산출된 **논문** 등 **연구성과**는 **차기사업 과제 신청시 활용**

< 연구성과별 가·감점 제도 >

■ 가점 : 교육부(舊교과부 및 한국연구재단 포함)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연구성과자가 과제 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

※ 단,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 감점 :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D등급)의 연구 책임자는 선정평가점수의 3% 감점 부여(종료일 후 3년간 적용, 단 성실실패 인정의 경우 제외)

【우수성과 선정】

○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소개서, 연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 우수성과 확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연말**에 **우수성과발표회** 등 **개최**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4.1～2월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시행계획 확정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리서치펠로우 신규과제 공모
'14.3～4월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리서치펠로우 신규과제 선정평가 ■ 계속과제 연차점검('10～'12년 상반기 선정과제) 실시 ■ 계속과제 연차점검('13년 상반기 선정과제) 실시
'14.5월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리서치펠로우 신규과제 선정 ■ 계속과제('10～'12년 상반기 선정과제) 연구개시(5.1)
'14.6월	■ 상반기 선정 과제(리서치펠로우, 지역) 연구개시(6.1) ■ 계속과제('13년 상반기 선정과제) 연구개시(6.1) ■ 종료과제중 후속연구지원 신청과제 연구성과물 접수 ■ 기본연구, 보호분야 신규과제 공모
'14.7～8월	■ 기본연구, 보호분야 신규과제 접수 및 선정평가 ■ 계속과제 연차점검('10～'12년 하반기 선정과제) 실시
'14.9월	■ 계속과제('10～'12년 하반기 선정과제) 연구개시(9.1) ■ 기본연구, 보호분야 신규과제 선정평가 ■ 계속과제 연차점검('13년 하반기 선정과제) 실시
'14.10월	■ 기본연구, 보호분야 신규과제 선정평가 ■ 추가지원과제 연차점검('12년～'13년 선정과제) 실시
'14.11월	■ 하반기 선정 과제(기본, 보호) 연구개시(11.1) ■ 계속과제('13년 하반기 선정과제) 연구개시(11.1) ■ 하반기 선정 과제(기본, 보호) 연구개시(11.1) ■ 우수성과 발표회 등 성과확산
'14.12월	■ 추가지원과제('12년～'13년 선정과제) 연구개시(12.17)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3년 실적	2014년 계획
기본연구	예산	■ 241,786백만원	■ 230,750백만원
	과제수	■ 5,005개(신규 1,727개)	■ 5,425개 내외
보호연구	예산	■ 1,902백만원	■ 1,500백만원
	과제수	■ 35개(신규 15개)	■ 32개 내외
리서치펠로우	예산	■ 31,812백만원	■ 33,250백만원
	과제수	■ 633개(신규 549개)	■ 661개 내외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예산	■ 28,000백만원	■ 25,000백만원
	과제수	■ 586개(신규 189개)	■ 508개 내외

V. 행정사항 및 공통 적용사항

1. 행정사항

□ 전문기관 장의 사업비 관리

○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

-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계좌 통합관리**가 **가능**하나, 각 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관리 및 운용상 발생한 **이자수입, 집행 잔액** 및 **과다지급액** 등은 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

- 단,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를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생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운용사항 보고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결과보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지원성과 등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 교육부-전문기관 간 사업위탁 협약 체결

○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위탁협약**을 **체결**

○ 단,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장)이 수립한 **사업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위탁협약**을 **대신**할 수 있음

2. 공통 적용사항

※ 해당 내용은 총괄적인 적용 사항이며, 일부 사업에 따라 변경 적용될 수 있음

□ 사업추진상 적용규정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제의 신청

○ 공고

- (공고 방식) 교육부(www.moe.go.kr)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일괄 공고

※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은 NTIS에도 병행 공고

- 사업 총괄 공고 시기 : 2014년 1월중(30일 이상 공고)

※ 2014년 교육부 학술진흥종합계획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1월)

○ 과제의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 연구책임자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력 및 탑재

- (소속기관 확인) 연구비중앙관리부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승인

※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학술진흥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학술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사업(유형)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형태 및 연구진 참여

- (개인연구) 연구책임자 1인 참여
- (공동연구)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 공동연구원 참여
- (집단연구) 연구책임자 외 공동연구원이 참여하되, 일정한 **기관(연구소)** 단위의 연구활동을 지원

□ 평가단계

○ 평가절차 및 내용

①요건 심사		②전공 평가		③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 ⇒	연구계획서 및 연구역량 평가	⇒ ⇒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교육부, 전문기관

※ 사업별, 전문기관별 별도 평가절차 및 내용 가능

○ 요건심사 : 전산시스템에 의해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확인

※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 사업담당자가 추가 확인

○ 전공평가

- 온라인평가 : 온라인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심사
- 패널평가 : 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 발표평가 : 패널평가에서의 의문사항 확인, 연구진 연구수행 의지 및 기관협력사항 확인
- PM Review :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 검증(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등)

※ PM Reviewer 구성 : 학문단장, 책임전문위원(CRB), 전문위원(RB)

○ 종합평가

- 평가 주관 : 종합평가단

※ 종합평가단 구성 :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PM, 외부심사위원

□ 선정절차 및 내용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

○ (예비선정 및 최종선정)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 예비발표 후 이의신청을 접수·심의한 다음 최종선정

※ 예비선정 이전 선정평가 단계에서 중복성 검토

○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3자간 지원 협약 체결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주체로 참여 가능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지급방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 장을 경유하여 지급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는 것도 가능

○ (지급시기) 최종선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간접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지급방법) 직접비와 별도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적용비율**에 따라 **일괄 지급**

※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기관별 간접비 적용비율 조정 및 확정

○ (간접비율 적용)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시점의 고시율**을 **적용**하되, 사업별로 간접비 탄력적용 가능

□ 종료과제 관리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

○ 연구결과 보고

- (기한)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보고서를 평가하는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

- (내용)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 소개서는 의무적으로 제출

- (방법) 온라인 제출

◇ 한국형 Grant 적용사업은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간략한 성과개요 및 논문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수행으로 산출된 논문 등 연구성과는 차기사업 과제 신청시 활용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연구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

※ 해당내용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해야 함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공개제한 요청)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연구성과관리

- (성과 등록) 연구종료일 이후 5년간 논문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가 도출되면 전문기관 정보시스템에 관련정보 등록해야함

- (성과소개서 제출) 과제 종료시 '연구성과 소개서*'제출을 의무화하여 연구성과의 학문적/기술적 수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

* 소개서 항목 : 성과유형, 활용분야, 연구단계, 타 부처 희망 연계사업 등

※ 수요자들이 기초연구성과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도를 작성.제공

※ 우수 연구성과는 타 부처사업과 연계하거나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 지원

□ 계속과제 관리

○ (관리대상) 다년 지원 과제

○ (관리내용) 연차 및 단계 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중단 통보일을 종료일로 산정하여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신청 및 참여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당연 취소

○ 연구 수행 전념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1책 3공**,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은 **3책 5공** 내에서 과제 수행 가능

※ 책 : 연구책임자급 과제, 공 : 공동연구원급 과제

※ (인문분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14.12.31일 이전인 과제는 연구수행 전념 과제 산정시 미포함

※ (이공분야)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수행 전념 과제 수에 미포함(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연구수행 전념의 적용 예외)

○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일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인문한국, 토대연구,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 및 이공), 신흥지역연구 지원 사업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

◇ 매년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차년도 정부(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다년도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 지원해 오던 사업은 계속 지원하되, '12년 이후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의 기간 중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될 경우에는 사업 지원 중단 가능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2014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Tel. 02-6222-6060, 044-203-6118~9 (야간) Fax 044-203-6133, 6144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대전청사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042-869-6114 / Fax. 042-869-6777
서울청사 [137-748]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Tel. 02-3460-5500 / Fax. 02-3460-5759